



시 보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 | |
|----------------|--------|
| 선 람 | 기관·의·장 |
| | |

제24호 2017. 6. 16(금)

조 례

- 남원시 조례 제 1345 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 1
- 남원시 조례 제 1346 호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3
- 남원시 조례 제 1347 호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19
- 남원시 조례 제 1348 호 남원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 43
- 남원시 조례 제 1349 호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 46
- 남원시 조례 제 1350 호 남원시 시세 징수 조례 ----- 49
- 남원시 조례 제 1351 호 남원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50
- 남원시 조례 제 1352 호 남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60
- 남원시 조례 제 1353 호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 68

규 칙

- 남원시 규칙 제 604 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 84
- 남원시 규칙 제 605 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칙 폐지규칙 ----- 132
- 남원시 규칙 제 606 호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33
- 남원시 규칙 제 607 호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 144
- 남원시 규칙 제 608 호 남원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 161

고 시

- 남원시 고시 제2017 - 69호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 179
- 남원시 고시 제2017 - 70호 운봉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 ----- 180

| | | | | | | | | | | |
|--------|--|--|--|--|--|--|--|--|--|--|
| 회 람 | | | | | | | | | | |
|--------|--|--|--|--|--|--|--|--|--|--|

※ 발행 : 남원시 / 편집 : 홍보전산과 ☎(063)620-6039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7년 6월 16일

남원시 조례 제 1345 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수 있다.”를 “수 있으며, 30년 이상 재직 한 공무원에게는 5일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제23조(특별휴가) ① ~ ⑫ (생략)</p> <p>⑬ 시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10년마다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p>1. ~ 4. (생략)</p> | <p>제23조(특별휴가) ① ~ ⑫ (현행과 같음)</p> <p>⑬ ----- ----- ----- 수 있으며,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5일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p> <p>1. ~ 4. (현행과 같음)</p> |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7년 6월 16일

남원시 조례 제 1346 호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남원시민들의 미술 문화 수요를 충족시키고, 남원시의 문화예술 역량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장작품”이란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이하“미술관”이라 한다)이 소유한 미술작품, 전시 관련 자료 등을 말한다.
2. “전시작품”이란 미술관이 일정 기간 동안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시하는 미술작품을 말한다.
3. “대여”란 소장작품을 일정한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4. “수집”이란 작품을 구입하거나 기증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미술관에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관리·운영

제3조(관리 및 운영) ① 미술관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 단, 미술관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기관이나 개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미술관을 직접 운영할 경우 필요한 기구 및 정원은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 및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4조(전시실 운영) ① 전시실은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공예·음악·문학 관련 전시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개관 및 휴관) 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

2. 1월 1일

3. 설날과 추석날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날

5. 임시 휴관일을 지정한 경우 휴관일 10일 전까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미술관의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경우 시장은 관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관람시간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제7조(관람료) 미술관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단, 초대전 등 특별전을 개최할 경우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람료를 책정하여 별도 징수할 수 있다.

제8조(관람료의 면제) ① 시장은 제7조의 단서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다만, 신분증 또는 증명서 등을 매표소에 제시하여야 한다.

1. 국민,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자

2. 보호자를 동반한 만 7세 이하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인 사람

3. 학술연구와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등급~3등급 장애인(동반보호자 1명 포함)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8.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10.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수급권자
 11. 미술관에 작품 또는 자료를 기증하여 미술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은 사람과 그 직계 가족
 12. ICOM(국제박물관협의회)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
 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② 시장은 미술관의 공익 달성 또는 미술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무료 관람 일을 지정할 수 있다.

제9조(관람료의 할인) ① 시장은 제7조의 단서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람료를 할인한다. 다만, 신분증 또는 증명서 등을 대표소에 제시하여야 하며, 중복 할인은 불가하다.

1. 시에 거주하는 시민 : 50퍼센트
2. 20명 이상 단체 손님 : 50퍼센트
3.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50퍼센트 (단, 셋째 아이가 18세 이하의 직계 가족에 한정함)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자원봉사카드를 소지한 사람 : 50퍼센트
5. 예술인패스를 소지한 사람 및 전북투어패스 이용자는 50퍼센트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10조(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미술관을 관람할 수 없다.

1. 음주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만 7세 이하의 어린이
3. 다량의 물품을 소지하거나 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 제 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
4.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그 밖에 전시작품과 기물의 보호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1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미술관 전시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흡연 또는 음주하는 행위
2. 전시작품을 만지는 행위
3. 시장의 허가 없이 전시작품에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4. 고성 등 다른 사람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작품 제작지원) 시장은 미술관 전시 목적으로 신규 작품제작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운영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작가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경영수익사업) ① 시장은 미술관의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하는 간행물과 아트상품 등을 판매할 수 있고,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생한 미술관 수익금은 시의 수입으로 한다.

제14조(기념품) 시장은 미술관의 홍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1. 이벤트 응모자와 당첨자
2. 설문조사 참여자
3. 전시 해설사, 자원봉사자, 인턴
4. 미술관 관련 추진사업 협력자

제15조(실비보상) 시장은 안내 및 작품보안, 전시 업무 보조 등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와 인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위원회 운영

제16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한다.

1.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운영자문위원회”라 한다)
2.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이하 “작품수집심의위원회”라 한다)

제17조(위원회 기능) ① 운영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술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사항
2. 미술관의 주요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소장 작품의 수집 계획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미술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작품수집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집대상작품의 선정 및 수집 여부 결정
2. 수집대상작품의 진위 여부 검토·판단·적정가격 산정
3. 기증 작품의 검토 및 수용 여부 결정
4. 그 밖에 작품 수집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위원회 구성) ① 운영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자문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③ 운영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문화예술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미술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미술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⑤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미술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시장이 위촉한다.

⑥ 운영자문위원회와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중복으로 위촉될 수 없다.

제19조(위원의 임기) 각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위원장의 직무)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위원회 회의) ① 각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소집 시 회의일시와 장소, 안건 내용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3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해외출장·질병·개인 업무 및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운영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미술관 운영에 불이익을 끼친 경우

제24조(간사) 각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25조(수당 등) 각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남원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소장작품의 수집과 관리

제26조(구입)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미술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작품 또는 자료를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할 수 있다.

제27조(기증 등) ① 시장은 작가 또는 소장자로부터 미술작품 및 물건의 기증·기탁·관리전환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

② 시장은 기증자를 예우하기 위하여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으며, 기증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증 작품 평가액의 20퍼센트 이내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기증 작품 평가액은 작품수집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③ 기증하려는 사람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기증품과 기증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관리책임자 지정 등) ① 소장작품 관리관은 문화예술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소장작품 출납원은 문화예술 업무담당자로 한다.

② 소장작품 관리관은 소장작품의 등록·관리·수리·복원·복제·출납·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소장작품 출납원은 소장작품 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를 보좌한다.

제29조(보관 및 관리) ① 시장은 소장작품이 훼손·분실·도난당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장작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30조(이용) ① 시장은 소장작품에 대한 열람 및 촬영, 또는 소장작품 이미지 파일 요구가 있을 경우 미술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학술·공익을 목적으로 할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31조(대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술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작품을 대여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립미술관 등이 공익 증진을 위해 개최하는 전시
2. 문화 교류를 위한 국제 전시
3. 작품을 기증한 사람이 특별히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소장 작품을 대여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장 작품을 대여 받으려는 자는 최초 작품평가액 기준으로 소장 작품에 대한 보험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소장 작품의 대여 기간은 90일 이내로 하며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⑤ 소장 작품을 대여 받으려는 자는 인수인계할 때 인수인계증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⑥ 소장 작품을 대여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일을 준수하여 작품의 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대여 신청한 작품 수가 10점 이하일 경우 : 대여 받으려는 날부터 30일 전
2. 대여 신청한 작품 수가 10점을 초과할 경우 : 대여 받으려는 날부터 60일 전

제32조(대여자의 준수사항) 제31조에 따라 작품을 대여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대여 받은 소장 작품의 안전한 이동 및 보관·전시 관리
2. 작품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포장 및 운반 등의 비용 부담

3. 대여 기간 중 훼손이 발생하면 소장 작품을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소장 작품을 분실할 경우 상응하는 가액으로 변상

4. 소장 작품에 대한 사진촬영·모사·모조 등 복제 금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33조(대여의 취소) 시장은 대여 받으려는 자가 대여 조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대여 목적과 다르게 이용할 경우 대여를 취소할 수 있으며, 대여기간 중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여한 소장 작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불용 결정) ① 시장은 소장작품이 심하게 훼손되거나 특정 소장 작품을 소장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용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불용 결정한 소장 작품은 매각·양여·교환·이관·폐기할 수 있다.

제5장 대관

제35조(대관 허가) ① 시장은 미술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문화예술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시실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대관 받으려는 자는 사용일 기준 60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전시실에 공백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은 대관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운영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관허가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하였을 때에는 결정일 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미술관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관 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관자에게 보험 가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대관 범위) 대관할 수 있는 주요 시설 및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 시설 : 전시실

2. 장비 : 영상장비, 음향장비 등

제37조(대관 사용시간) 미술관 시설 1일 대관 사용시간은 제6조제1항과 같다.

다만,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 시간을 연장 허가할 수 있다.

제38조(대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미술관 시설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42조에 따라 2회 이상 대관 허가를 취소당하였거나 전시회 중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대관 신청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 대관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9조(대관료) 대관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사용 개시 30일 전까지 별표 2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0조(대관료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전액
2. 시의 행사·미술관의 운영상 대관이 어렵게 된 경우 : 전액
3. 대관자가 대관사용일 14일 전까지 대관 취소를 신청할 경우 : 전액
4. 대관자가 대관사용일 7일 이전에 대관 취소를 신청한 경우 : 50퍼센트

제41조(대관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 전액
2. 시가 후원하거나 비영리 목적의 행사 : 50퍼센트

제42조(대관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을 취소하거나 사용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어떤 배상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1. 대관 신청 시에 기록한 내용과 다른 전시 등을 했을 경우
2.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미술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43조(대관자 준수사항) ① 대관자는 미술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사용할 때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44조(손해배상) 미술관 자체 전시의 경우 관람자가 전시작품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하며, 대관전시의 경우 전시작품 등의 관리에 대해서는 대관자가 책임을 진다.

제6장 부속시설

제45조(편의시설 설치·운영) ① 시장은 관람객의 편의 제공, 미술관 홍보를 위한 아트상품 판매 등 미술관의 적극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카페
2. 아트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 기간 중이라도 위탁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가 위탁 조건 등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운영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이유로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장 명예관장

제46조(임명) 시장은 남원시민이 미술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거나 미술관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명예

관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47조(역할) 명예관장은 미술관 운영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며, 관장이 공식일 경우 관장의 역할을 임시 수행한다.

제48조(임기) 명예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보궐 명예관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9조(해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명예관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가 해임을 원하는 경우
2.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3.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0조(실비보상) 명예관장이 제47조에 따른 자문에 응답하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5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소장작품 이용료(제30조 관련)

| 구 분 | 기 준 | 금 액 | 비 고 |
|----------|-----|---------|-----|
| 사진 촬영 | 1점 | 20,000원 | |
| 사진 파일 사용 | 1매 | 10,000원 | |

[별표 2]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대관료(제39조 관련)

| 구 분 | 기 준 | 단가 (㎡당) | 비 고 |
|------|---------------|------------|---|
| 전시실 | 1일 (8시간) | 300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관 기간 중 일부 시간만 사용한 경우라도 1일(8시간 기준) 사용한 것으로 본다. ○ 당일 연장 사용할 경우 1시간 단위(8시간/일)로 산정한다. ○ 냉·난방비 포함 |
| 영상장비 | 대관시설 사용료의 10% | | |
| 음향장비 | 대관시설 사용료의 10% | | |

[별지 제1호 서식]

소장작품 열람/촬영/복제 신청서

| | | | | | | | |
|-------|-----|----|----------|-----|------|---------|----|
| 신청자 | 성명 | | 주소 (연락처) | | | 생년월일 | |
| | | | | | | | |
| 대상 작품 | 작가명 | 명세 | 관리번호 | 부문 | 제작년도 | 규격(cm) | 비고 |
| | | | | | | | |
| 열람 기간 | 년 월 | | 일부터 | 년 월 | | 일까지(일간) | |
| 이용 사유 | | | | | | | |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0조에 따라 위 열람/촬영/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소장 · 작품 대여 신청서

| | | | | | | | | |
|------|--------------------------------|----|------|----|------|--------|----|--|
| 신청자 | 기관명 | | | | | 성명 | | |
| | 주소 | | | | | 연락처 | | |
| 대여작품 | 작가명 | 명세 | 관리번호 | 부문 | 제작년도 | 규격(cm)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여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일간) | | | | | | | |
| 대여사유 | | | | | | | | |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1조에 따라 위 작품의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7년 6월 16일

남원시 조례 제 1347 호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및 제4호 중 “기금”을 각각 “기금으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생업자금”을 “기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공공근로”를 “자활근로 사업의”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금운용수익금

제3조 제2호 중 “자활기업”을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으로 하고, 제5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자활연수원 위탁 교육훈련 참가에 드는 비용(교육비, 식비, 교통비, 숙박비)

6.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격증 취득에 드는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자활기업 및 시장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구입 및 시설보강사업비 등 지원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인·기관·단체”를 “개인·자활기업·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11호에 따른 수급자”를 “제10호에 따른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자활기업”을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3조제5호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로 한국자활연수원 교육훈련 대상자

제5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3조제6호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자로 자격증을 취득한 개인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인·기관·단체”를 “개인·자활기업·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으로, “지원받고자 하는”을 “지원받으려는”으로, “첨부하여”를 “붙여”로, “단체장”을 “장”으로 한다.

제6조 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격증 취득 장려금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제7조 중 “개인·기관·단체”를 “개인·자활기업·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승인신

청서 (별지 제4호 서식)를 미리 제출하여”로, “언어야”를 “받아야”로 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4호에 따라”를 “제5조제1호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라목 중 “처리비용 등”을 “처리비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1,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3년 거치 5년”을 “1년 거치 3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2퍼센트”를 “1퍼센트”로, “6.5퍼센트”를 “2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융자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제7조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에는 제4호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한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의2제1항 중 “자활기업에”를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에”로, “7천만원”을 “7천만원,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에 4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활기업은 5년 거치 후 5년 내”를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은 3년 거치 5년 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퍼센트”를 “1퍼센트”로, “6.5퍼센트”를 “2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에는 제2항에”를 “경우에는 제2항에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6월”을 각각 “6개월”로, 같은 호 및 제3호 중 “때”를 각각 “경우”로 한다.

제8조의3부터 제8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기금의 대여 결정) 기금의 대여에 관한 사항은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남원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거나, 시장이 결정한다.

제8조의4(자격증 취득 장려금 지급) ①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하였던 사람이 취·창업을 위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30만원 범위에서 자격증 취득에 드는 비용을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자격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미용사, 한식조리사, 자동차 정비기능사
2. 운전면허증, 컴퓨터 자격증, 요양보호사
3. 간호조무사 등 그 밖에 취·창업을 위한 자격증

제8조의5(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7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드는 비용은 「지역 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을 “(자활기업 등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활기업”을 “자활기업 등”으로, “그”를 “자활기업의 경우 7천만원 범위,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의 경우 4천만원 범위에서 그”로, “범위내”를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때”를 “경우”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 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마다 남원시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의2의 제목 “(기금의 운용 심의)”를 “(기금의 운용 심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남원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를 “위원회에서 심의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기하기 위해”를 “위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호에 해당함”을 “제1호”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지원금 사후관리) ① 조례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사용 결과 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금사용 결과 보고서를 조사하여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간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의 자활기금 반납 또는 환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향후 지원금 신청 및 지급과정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면제) 시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에 따라 연체료 및 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별지 제1, 2, 3, 4, 5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자금대여를 받은 자는 이 조례 시행일 이후부터는 제8조제4호, 제5호 및 제8조의2제2항, 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자활기금 대부 신청서(제6조제1항 관련)

- 1. 주 소 :
- 2. 성 명 :
- 3. 대 부 신 청 금 액 :
- 4. 대 부 신 청 사 유 :
- 5. 상 환 방 법 및 기 간 :
- 6. 대 부 신 청 사 업 계 획 :

- 가. 사 업 명 :
- 나. 사 업 내 용 :
- 다. 사 업 장 위 치 :
- 라. 사 업 의 필 요 성 :
- 마. 사 업 실 시 기 간 :
- 바. 재 원 계 획 :

(단위 : 천원)

| 총사업비 | 용 자 | 자 부 담 | 자부담방법 | 비 고 |
|------|-----|-------|-------|-----|
| | | | | |

※ 사업비 산출명세 : 별첨

사. 사업수지 계산

(단위 : 천원)

| 총 수 익 | 총 비 용 | 순 수 익 | 비 고 |
|-------|-------|-------|-----|
| | | | |

※ 사업수지 계산명세 : 별첨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귀 시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자활기금 대여를 신청하오니 대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추 천 인 : (서명 또는 인)

읍·면·동 장 : 직인

자활후견기관장 : 직인

남 원 시 장 귀 하

사업비산출명세

| | | | |
|-----|--|-----------|--|
| 주 소 | | | |
| 성 명 | | 생년월일(남/여) | |

구체적인사업계획

1. 사 업 명 :

2. 사 업 개 요 :

3. 사업비 산출내역 :

4. 사업비부담계획 :

○ 사업비총액 :

○ 대 여 액 :

○ 자 부 담 :

5. 사업효과

사업수지계산

| | |
|--|--|
| 주 소 | |
| 성 명 | |
| 생년월일(남/여) | |
| <p>1. 사업명 :</p> <p>2. 사업개요 :</p> <p>가. 사업량 :</p> <p>나. 사업비 :</p> <p style="padding-left: 20px;">- 총사업비 :</p> <p style="padding-left: 20px;">- 용자액 :</p> <p style="padding-left: 20px;">- 자부담 :</p> <p>3. 수지계산</p> <p style="padding-left: 20px;">- 평균 일일 예상매출액 :</p> <p style="padding-left: 20px;">- 한달 매장 예상매출액 :</p> <p style="padding-left: 20px;">- 재료비 :</p> <p style="padding-left: 20px;">- 월임대료 :</p> <p style="padding-left: 20px;">- 각종공과금(전화세,수도세,전기세,난방비):</p> <p style="padding-left: 20px;">- 총수익</p> <p style="padding-left: 20px;">- 총비용</p> <p style="padding-left: 20px;">- 순수익</p> | |

자활기금 대여 대상자 및 보증인 자격요건확인서

1. 용자대상

| | | | |
|---------|--|-----------|--|
| 주 소 | | | |
| 성 명 | | 생년월일(남/여) | |
| 관내전입일 | | | |
| 보 호 구 분 | | 재 산 액 | |
| 가 구 원 수 | | 1인당평균소득 | |

2. 보증인

| | | | |
|-----------|-------------|--|--|
| 주 소 | | | |
| 성 명 | | | |
| 연간재산세 납부액 | (재산세 + 종토세) | | |
| 주 소 | | | |
| 성 명 | | | |
| 연간재산세 납부액 | (재산세 + 종토세) | | |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회복지담당자 직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생활담당 직

맞춤형복지담당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담당자 직

성 명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직인

남 원 시 장 귀 하

[별지 제2호 서식]

재 정 보 증 서 (제6조제1항 관련)

○ 용자대상자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남/여) :

상기 자는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대여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 등이 연대하여 보상할 것을 이에 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남/여) :
 보증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남/여) :

※ 생활안정자금 및 자조자립금일 경우 보증인을 1명으로 하고, 용자 및 보증인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은 자필 작성 원칙.

남 원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제7조 관련)

1. 신청자

- 성 명 (법인·단체명)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전화 :)

2. 지원받은 내용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지원금액 : 금 원(W 원)

3. 변경사유 :

4. 변경하려는 내용

| 구 분 | 당초계획 | 변경계획 | 비고 |
|--------|------|------|----|
| 예산변경 | | | |
| 사업내용변경 | | | |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자활기금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 원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자활기금 사용결과 보고서(제11조의2 관련)

- 1. 사 업 명 :
- 2. 총 사 업 비 :
- 3. 사 업 기 간 :
- 4. 사업비 집행사항

| 구분 | 사업비 집행내역 | | | | 비고 |
|-----|----------|-------|-----|-------|----|
| | 총사업비 | 기금지원액 | 자부담 | 후원금 등 | |
| 계 | | | | | |
| 집행액 | | | | | |
| 잔액 | | | | | |

5. 참고자료

- 1) 기금 지원 사업 추진실적 1부
- 2) 지원금 집행 세부내역 1부
- 3) 영수증 사본 및 세금계산서 각 1부
- 4) 그 밖에 증명자료 각 1부

위와 같이 남원시 자활기금을 사용한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남 원 시 장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조(기금의 조성) 남원시 자활 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생 략) 3. 다른 <u>기금</u>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u>기금</u>의 장기차입금 5. <u>생업자금</u>의 대여에 따른 이 자수입 6. <u>공공근로</u>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u>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수 익금</u> | <p>제2조(기금의 조성)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현행과 같음) 3. ---- <u>기금으로부터</u>----- 4. ----- <u>기금으로 부터</u>---- 5. <u>기금</u>----- --- 6. <u>자활근로 사업의</u> ----- ---- 7. <u>기금운용수익금</u> |
| <p>제3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 도에 사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u>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u> 3. · 4. (생 략) <p><신 설></p> | <p>제3조(사업의 범위)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u>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 활근로사업단</u>----- 3. · 4. (현행과 같음) 5. <u>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 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한</u> |

5.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
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

국자활연수원 위탁 교육훈련
참가에 드는 비용(교육비, 식
비, 교통비, 숙박비)

9. (현행 제5호와 같음)

6.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격증
취득에 드는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
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
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
자금 채무

8. 자활기업 및 시장형 자활근
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사업비 등
지원

제5조(지원대상) -----

개인·자활기업·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 -----.

1. -----

2호 및 제11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4. (생략)

5. 제3조제5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신설>

제6조(지원신청) ① 제5조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동장 또는 자활사업실시기관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 (생략)

<신설>

② (생략)

----- 제10호에 따른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2. -----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

3. 4. (현행과 같음)

5. 제3조제5호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로 한국자활연수원 교육훈련 대상자

6. 제3조제6호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자로 자격증을 취득한 개인

제6조(지원신청) ① ----- 개인·자활기업·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 -----

----- 지원받으려는 ----- 붙여 -----

---장-----

1. 2(현행과 같음)

3. 자격증 취득 장려금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
 단체 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금의 대여) 제3조제4호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를 할 수 있으며, 자금의 종류 및 용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안정자금
 - 가. ~ 다. (생략)
 - 라. 그 밖에 의료, 장제, 사채 처리비용 등
 - 마. (생략)
2. (생략)
3. 생활안정자금의 대여금액은 1세대당 300만원, 자조자립자금은 1세대당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자금을 대여 받은 사람은 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는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제7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 개인·자활기업
 ·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 -----
 ----- 변경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를 미리 제출하여 -----
 ----- 받아야 --.

제8조(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금의 대여) ① 제5조제1호의-----

 -----.

1.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처리비용
 마.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

 ----- 2,000만원-----
 -----.
4. -----

일시상환, 자조자립자금의 경우에는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 할 수 있다.

5. 대여자금의 이자는 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는 무이자로 하고, 자조자립자금의 경우에는 연 2퍼센트로 하며, 각각 상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연 6.5퍼센트의 연체이율을 가산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조의2(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제3조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

----- 1년 거치 3년 -----

-----.

5. -----

----- 1퍼센트로 -----

----- 2퍼센트의-----
-----.

② 시장은 기금을 융자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제7조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에는 제4호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한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의2(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에 ----- 7천만원,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에 4천만원-----
-----.

② -----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은 3

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6.5퍼센트의 연체 이자를 적용한다.

④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신 설>

년 거치 5년 내 -----
-----.

③ ----- 1퍼센트로 -----
----- 2퍼센트 -----

④ -----

----- 경우에는 제2항에도 -----
-----.

1. -----
---- 경우
2. -----
----- 6개월 -----

--- 6개월 -----
--- 경우
3. -----

---- 경우

제8조의3(기금의 대여 결정) 기금의 대여에 관한 사항은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남원시 생활보장위원회

<신 설>

<신 설>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 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대여자

(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거나, 시장이 결정한다.

제8조의4(자격증 취득 장려금 지급) ①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하였던 사람이 취·창업을 위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30만원 범위에서 자격증 취득에 드는 비용을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자격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이·미용사, 한식조리사, 자동차 정비기능사
- 2. 운전면허증, 컴퓨터 자격증, 요양보호사
- 3. 간호조무사 등 그 밖에 취·창업을 위한 자격증

제8조의5(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7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드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9조(자활기업 등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 등----- 자활기업의 경우 7천만원 범위,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

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2퍼센트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생략)

③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의2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 계획에 관한 사항
-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시장은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을 매 회계연도 마다 남원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11.24, 2011.12.30., 2014.02.10.>

③삭제

제10조의2(기금의 운용 심의) ①

의 경우 4천만원 범위에서 그 ----- 범위-----
-----.

② (현행과 같음)

③ -----

----- 경우-----
-----.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
 -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 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마다 남원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의2(기금의 운용 심의 등)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남원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1. ~ 3. (생략)

② 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할 경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2. (생략)

3. 위원이 제1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신설>

① -----
-----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

-----.

1. ----- 위해 -----

-----.

2. (현행과 같음)

3. ----- 제1호 -----

-----.

제11조의2(지원금 사후관리) ① 조례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사용 결과 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금사용 결과 보고서를 조사하여 기금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제12조(감면조치)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사람과 보증인이 사망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어 그 상환 의무를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간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의 자활기금 반납 또는 환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향후 지원금 신청 및 지급과정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2조(면제) 시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에 따라 연체료 및 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
---- 필요한 -----
-----.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7년 6월 16일

남원시 조례 제 1348 호

남원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 드리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른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홀로 사는 노인”이란 가족 없이 혼자 살아가는 노인을 말한다.
3.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의 사례를 말한다.
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5. “홀로 사는 노인생활관리사”란 보건복지부 시행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

해 홀로 사는 노인에게 정기적 방문, 안부전화,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고독사 예방추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황조사 및 등록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
2.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신보건 및 건강관리상태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홀로 사는 노인생활관리사의 정기적 방문 및 안부확인 등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6. 고독사 노인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①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의 친인척 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①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시 관내에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홀로 사는 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② 시장은 동행정복지센터 및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하여 발굴한 고독사 위험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시장이 인정한 자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7조(고독사 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독사 위험자에게 심리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치료
2. 홀로 사는 노인생활관리사 파견으로 말벗 및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
3. 가스·화재·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4. 고독사 위험자의 개인별 서비스 계획 수립과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을 적극 발굴 연계
5. 무연고 사망 시 장례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고독사 위험자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7년 6월 16일

남원시 조례 제 1349 호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 받은 전라북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남원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도세와 시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면·동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읍·면·동장 또는 이·통·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이·통·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남원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남원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로 한다.

나. 제2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제1항제3호”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1항제5호”로, 제2항제2호가목 중 “「지방세기본법」 제65조”

를 “「지방세징수법」 제7조”로, 제2항제2호나목 중 “「지방세기본법」 제132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11조”로, 제2항제2호다목 중 “「지방세기본법」 제140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1조”로, 제2항제2호라목 중 “「지방세기본법」 제9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08조”로, 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제1항제5호”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1항제3호”로 한다.

다. 제5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라. 제8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로 한다.

② 「남원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로 한다.

나. 제2조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3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를 인용한 경우 이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시세 징수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7년 6월 16일

남원시 조례 제 1350 호

남원시 시세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채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채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를 인용한 경우 이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7년 6월 16 일

남원시 조례 제 1351 호

남원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지방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거”를 “「지방세기본법」 제76
조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3, 4, 5, 6, 7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및 별지 제
12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41조(납세자권리현장 제정) ① 시장은 「지방세법」 제65조의 <u>규정에 의거</u> 납세자 권리현장을 제정 고시하여 납세자에게 납세 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를 알려 주어야 한다.</p> <p>② (생략)</p> | <p>제41조(납세자권리현장 제정) ① --- 「지방세기본법」 제76조에 <u>따라</u> ----- ----- ----- -----</p> <p>② (현행과 같음)</p> |

[별지 제1호 서식]

과세처분·세무조사 중지명령 및 시정·소명요구서

| | | | |
|------------------------------|-----|------------|-----|
| 문서번호 : | 담 당 | 납세자 보호관 | 시 장 |
| 수 신 : 세무부서장 | | | |
| 제 목 : 과세처분·세무조사중지 및 시정·소명요구서 | | | |

귀 세무부서의 아래 (예상) 과세처분·세무조사에 대하여 과세처분중지명령·세무조사중지명령 및 시정요구·소명요구를 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대 상 자 | 주 소 (사업장) | 전화번호 |
|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 명 | 생 년 월 일 |

(예상)과세 처분 또는 세무조사내용

과세처분·세무 조사중지 또는시정요구·소명요구사유

과세처분·세무 조사중지 내용 또는시정요구·소명요구 내용

년 월 일

남원시 납세자보호관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3호 서식]

고 충 민 원 신 청 서

| | | | | | |
|------------------|-----------------------------|--|---------------|------|--|
| 민 원 인 | 주 소 (사 업 장) | | | 전화번호 | |
| | 상 호 |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
| 고 충 내 용 | ※고충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 | | | |

위와 같은 사유로 고충민원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서류 : 1.
2.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작성자)

남 원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서

| | | |
|---------------------|-----|--------|
| 문서번호 : | 담 당 | 납세자보호관 |
| 수 신 : 세무부서장 | | |
| 제 목 :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 | | |

아래 민원인으로부터 고충민원이 제기되어 귀 세무부서의 의견을 조회하니 . . . 까지 당초처분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당해 고충의 내용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시정하고 그 결과를 . . . 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민 원 인 | 주 소 (사 업 장) | | | 전화번호 | |
| | 상 호 | | 사 업 자 등록번호 | | |
| | 성 명 | | 생년월일 | | |

| | | | | | |
|------------------|--|--|--|--|--|
| 고 충 내 용 | | | | | |
|------------------|--|--|--|--|--|

붙임 : 고충민원서 사본 1부

년 월 일

남원시 납세자보호관 (인)

[별지 제5호 서식]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및 처리결과 통보서

문서번호 :
 수 신 : 납세자보호관
 참 조 :
 제 목 :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및 처리결과 통보

| | |
|-----|-------|
| 담 당 | 세무부서장 |
| | |

아래 민원인이 제출한 고충민원을 아래와 같이 의견(직권처리하였음)을 통보합니다.

| | | |
|-------------|----------------|---------|
| 민 원 인 | 주 소 (사 업 장) | 전화번호 |
|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 명 | 생 년 월 일 |

고충내용

의견 및 처리내용

붙임 : 결정결의서 등 관계증명서류.

년 월 일

세무부서장 (인)

[별지 제6호 서식]

납세자보호위원회심의자료

| | | |
|-----|------------|-----|
| 담 당 | 납세자 보호관 | 시 장 |
| | | |

(접수번호 :)

| | | | |
|-------------|----------------|----------|--|
| 민 원 인 | 주 소 (사 업 장) | | |
| | 상 호 | 사업자등록 번호 | |
| | 성 명 | 생 년 월 일 | |

고충요지

처분내용

주무과
의 견

심 리 판 단
가. 쟁 점
나. 사실관계
다. 관련법령
라. 심리의견
※별지작성 가능

붙임서류 : 1.
2.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7호 서식]

납 세 자 보 호 위 원 회 의 결 서

(접수번호 :)

| | | | | |
|--------------------------|----------------|--|-------------|--|
| 민 원 인 | 주 소 (사 업 장) | | 전화번호 | |
| | 상 호 | | 사업자등록 번호 | |
| | 성 명 | | 생년월일 | |
| 고 충 내 용 (요지) | | | | |
| 의 결 내 용 | 시정, 일부시정, 시정불가 | | | |
| 의 결 이 유 | ※ 별지작성 가능 | | | |

년 제 회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위 원 장 (인)
 위 원 (인)

- 붙임 1. 회의록
- 2. 심의자료

(별지 제9호 서식)

세무상담 처리 협조전

아래 민원인으로부터 세무상담이 제기되어 귀 세무부서에 이첩하니, 상담내용을 검토 후 민원인에게 알려주시고 그 결과를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민 원 인 | 성 명 | |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 소 (사업장) | | | 전화번호 |
| 제 목 | | | 처 리 기 한 | |
| 상 담 요 지 | | | | |

상 담 자 성 명 :

전화번호 :

남원시 납세자보호관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 / m²)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7년 6월 16 일

남원시 조례 제 1352 호

남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취급하게 하기”를 “취급하기”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기명날인”을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한다.

제3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일반회계는 단일 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제8조 제2항 중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을 “금고약정을 해지하려는”으로 한다.

제10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남원시의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 <p>제1조(목적) -----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 -----.</p> |
|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 <p>제2조(용어의 정의) ----- ----- 뜻은 ----- -----.</p> |
| <p>1. “금고”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u>취급하게 하기</u>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려 지정한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산림 조합법」에 따른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 금고,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p> <p>2. (생략)</p> | <p>1.----- ----- ----- ----- ----- <u>취급하기</u> ----- ----- ----- ----- ----- ----- ----- ----- ----- -----.</p> <p>2. (현행과 같음)</p> |

3. · 4. · 5. (생략)

6. “금고약정” 이란 시장과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7. · 8. (생략)

제3조(금고지정 방법) ① · ② (생략)

③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은 1금고(단일금고)로 지정한다. 다만, 특별회계 · 기금은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생략)

제8조(금고약정의 해지) ① (생략)

② 시장은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3. · 4. · 5. (현행과 같음)

6. -----

-----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 -----.

7. · 8. (현행과 같음)

제3조(금고지정 방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일반회계는 단일 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④ (현행과 같음)

제8조(금고약정의 해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금고약정을 해지하려는 -----

-----.

제10조(시행규칙) -----
필요한-----
-----.

[별표 1]

남원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4조제3항 관련)

| 항 목 | 세 부 항 목 | 배 점 | 비고 |
|-------------------------------|-------------------------|------|----|
| 계 | | 100 | |
| | 소 계 | 31 | |
|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 (10) | |
| | - 국외 평가기관 | 6 | |
| | - 국내 평가기관 | 4 | |
| |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21) | |
| | - 총자본비율 (안정성) | 7 | |
| |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 7 | |
| | -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 6 | |
| - 대손충당금적립률 (건전성) | 1 | | |
| | 소 계 | 18 | |
|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 6 | |
| |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 5 | |
| | 다. 시 대출금리 | 4 | |
| |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 3 | |
| | 소 계 | 19 | |
|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 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 4 | |
| |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 7 | |
| |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 8 | |
| | 소 계 | 23 | |
| 4. 금고업무 관리 능력 |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 5 | |
| |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 7 | |
| |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 8 | |
| |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 3 | |
| | 소 계 | 9 | |
|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 5 | |
| | 나. 시와의 협력사업계획 | 4 | |

[별표 2]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 (제4조제3항 관련)

1. 일반원칙

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 하고, 필요시 평가 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 할 수 있다.

나. 세부항목별 배점 하한은 배점한도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10퍼센트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한다.

※ 예시(국외평가기관) - 1순위 6.0점, 2순위 5.4점, 최저순위 3.6점

다만, 항목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는 순위 간 점수 편차를 배점 한도의 5퍼센트의 비율로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한다.

※ 예시(정기예금) - 1순위 6.0점, 2순위 5.7점, 최저순위 3.6점

2.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1)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 공인된 국내(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정보 등)·국외(S&P, Moody's, Fitch) 등 신용조사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배점하고,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 평가

기준별 등급을 비교하여 배점

단,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배점을 평가

2) 주요 경영지표 현황

- 금융기관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 처리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① 총자본비율 (안정성)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로 평가

② 고정이하 여신비율 (건전성)

③ 자기자본 이익률 (수익성)

④ 대손충당금 적립률 (건전성)

나.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 정기예금 예치금리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2) 공공예금 적용금리

-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순위에 따라 배점

3) 시 대출금리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

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 입출금식 예금의 금리 수준에 따라 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역주민 이용편의성

1)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입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도내 영업망 및 관내 지점의 수(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2)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 최근 3년간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실적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

-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가상계좌 등) 증진 방안, 납세자 편의성 제고 방안(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 은행 이용, 지방세 납입을 위한 타 은행 이용자 수수료 혜택) 파악 및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 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금고업무 관리 능력

1)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 세입금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 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Cash-flow)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2) 금고관리업무 수행 능력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금고업무 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금고업무 수행 조직 및 인사운영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금고관련 세입 세출의 자금관리 및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인증 등 관리 시스템 구축, 지방세 수납 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 등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 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마.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

1).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사회, 경제, 교육, 복지, 문화, 예술 등의 발전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2) 시와의 협력사업

- 시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금고 약정기간 동안 지원하기로 제안한 협력 사업비 금액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7년 6월 16 일

남원시 조례 제 1353 호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1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제9조 제5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6조의3제2항”을 “영 제6조의5제2항”으로 한다.

제18조 중 “영 제11조제2항제3호”를 “영 제11조제3항제3호”로 한다.

제18조의2제8호 중 “2011년 6월 30일”을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간이축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을 “간이 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 구조”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온실”을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창고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에 설치하는 천막”을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 작업용 등

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 중 “「관광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관광특구에 설치하는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을 “야외 전시시설 및 촬영시설”로 하고 같은 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야외 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건축물의 공사감리) 법 제25조제12항에 따른 감리비용의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제2항의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영 별표1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과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용 창고시설은 감리비용의 기준에 50퍼센트를 적용하고, 파이프구조로 된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은 감리비용의 기준에 25퍼센트를 적용한다.

제24조제4항 중 “영 제15조제5항제15호”를 “영 제15조제5항제16호”로 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을 “위하여 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제35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86조제2항의 단서 규정에서”를 “영 제86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제4항 중 “영 제86조제2항제2호가목”을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는 1년에 1회로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는 총 3회 이내로 한다.

제4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41조 및 제4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3.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
4.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 ②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공사 중인 위반 건축물에 시정명령하였으나, 공사를 강행하여 건축을 완료한 경우로 한다.

제42조(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기초 및 골조만 완료 되었을 경우
2. 위반행위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3. 마을회관, 노인정 등 주민 공동소유 및 이용시설

②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별표 3,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사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별표 3]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제24조 관련)

| 용 도 | 구 조 | 면 적 | 허용지역 | 기타 |
|--|---|------------|----------|--|
| 주차장 | 철골조립식 | 제한없음 | 미관지구는 불가 | 1층 및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한정함 |
| 화 원 | 철골조립식 | 100제곱미터 이하 | 미관지구는 불가 | 1층 및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한정함 |
| 관리사무실 (주차장, 화원, 체육시설) | 철골조립식 또는 컨테이너 | 30제곱미터 이하 | 미관지구는 불가 | 1층 및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한정함 |
| 기계보호시설 | 철골조립식 | 300제곱미터 이하 | 미관지구는 불가 | 1층 및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한정함 |
| 차양시설, 비가리개시설 | 제한없음 (다만,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시장 환경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기존 재래시장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 도매시 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 는 것에 한정함 (소화활동·소방차 진입 등 「소방관 련법」 및 「도로법」 그 밖의 관 련법에 저촉사항 없는 것) |
| 창고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에 설치하는 시설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것) | 제한없음 | 공장부지내 | 천막형태가 아닌 일정 내구성을 갖춘 구조 허용(「건축법」 및 「소방관련법」 등 그 밖의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 |

※ 공통사항

- 1) 옥상부분에는 설치 불가(단, 공장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
- 2) 민법 제242조의 규정을 적용함
- 3) 존치기간은 3년 이하로 하되 미관상 지장이 없는 경우로 시장이 존치기간을 연장 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장 가능

[별표 4]

대지 안의 공지기준(제31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 대상 건축물 | 띄어야 하는 거리 |
|--|---|
| 가.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
| 나.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
| 다.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미터 이상 |
|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에 한정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미터 이상 |
| 마.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3미터 이상 ▪ 연립 2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
| 바. 그 밖에 건축물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미터 이상(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0.5미터 이상, 외벽선 1미터 이상) |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 용도 및 지역 내 대상 건축물 | 건축기준의 범위 |
|--|---|
|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 ▪ 1미터 이상 |
| 나.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 ▪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1.5미터 이상 |
| 다.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 1.5미터 이상 |
|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 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일반 숙박시설에 한정함).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 1.5미터 이상 |
| 마. 공동주택. 다만,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 ▪ 아파트 3미터 이상 ▪ 연립 1.5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
| 바. 그 밖에 모든 건축물. 다만 맞벽건축물은 제외한다. | ▪ 0.5미터 이상(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0.5미터 이상, 외벽선 1미터 이상) |

비고

- 1)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은 건축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 2)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별표 1 제1호, 제2호 및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이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를 포함하여 2개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로서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도로와 접한 공공공지 및 녹지를 포함한다)면에 접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 3)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된 용도에 적용되는 대지의 공지 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7조(건축심의대상 및 심의요건 제한)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생 략)</p> <p><u>1의2. 영 제5조의5제5호에 따른 미관지구안의 신축·증축·개축·재축(단, 증축·개축·재축은 전면부 또는 수직 건축을 제외한 것은 연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상에 한정한다)과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대수선(단, 외부형태 변경면적 85제곱미터 이상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u></p> <p>2.·3. (생 략)</p> <p>② (생 략)</p> <p>③ ~ ⑤ (생 략)</p> <p>⑥ 제1항에 따른 심의를 받은 사항의 유효기간은 심의결정 통보일부터 <u>1년</u>으로 한다.</p> <p>제9조(소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 ④ (생 략)</p> <p>⑤ 위원회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소위원회가 심의한다.</p> | <p>제7조(건축심의대상 및 심의요건 제한) ① ----- -----.</p> <p>1. (현행과 같음) <u><삭 제></u></p> <p>2.·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⑥ ----- ----- ----- <u>2년</u>-----.</p> <p>제9조(소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 -.</p> |

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를 건축사의 설계 없이 건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 1. ~ 7. (생략)
-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 9. (생략)
-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 건축물
- 11.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 12. 창고용, 간이포장용, 간이수

-----.

- 1. ~ 7. (현행과 같음)
- 8. -----

--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
- 9. (현행과 같음)
- 10. -----
- 간이 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
- 11. -----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

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에 설치하는 천막, 그 밖
에 이와 비슷한 것

13. (생 략)

14. 「관광진흥법」 제2조제11
호에 따른 관광특구에 설치하
는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생 략)

<신 설>

<신 설>

이수선 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
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
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
한다)-----

13. (현행과 같음)

14. 야외 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현행과 같음)

16. 야외 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
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
곱미터 이하인 것

제19조의2(건축물의 공사감리) 법
제25조제12항에 따른 감리비용
의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
의3제2항의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영별표1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
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
한다)과 「농어업재해대책법 시
행령」 제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용 창고시
설은 감리비용의 기준에 50퍼센
트를 적용하고, 파이프구조로
된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은 감

제24조(가설건축물) ① ~ ③ (생략)

④ 영 제15조제5항제15호의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3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28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① (생략)

②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20년이 지난날부터 매년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이 중복될 때에는 수시점검을 면제한다.)

2.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는 수시점검 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과 수시점검 실시

리비용의 기준에 25퍼센트를 적용한다.

제24조(가설건축물)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15조제5항제16호-----

--.

제28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위하여 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
-.

<삭 제>

<삭 제>

절차를 기준 일부터 1년이 되
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미리 알
려야 한다.

3. 수시점검의 면제는 영 제23
조의2제4항을 따른다.

제34조(둘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
우의 완화)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둘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
우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부분에 해당 도로에 대
한 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
로 너비로 본다.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
계선으로부터 40미터 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
분에 있어서 해당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
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는
그 부분 중 넓은 도로측의 대
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4
0미터 이내의 부분

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
축물의 높이제한) ① (생 략)

<삭 제>

<삭 제>

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
축물의 높이제한) ① (현행과

② 영 제8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 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영 제86조제2항의 단서 규정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1미터 이상으로 한다.

④ 영 제8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으로 한다.

⑤·⑥ (생략)

제36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서 “건축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되는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1. 의료시설
- 2. 운동시설

같음)

<삭제>

③ 영 제86조제3항에 따라 ---

④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

⑤·⑥ (현행과 같음)

제36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

-----.

- 1.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삭제>

3. 위락시설

4. (생략)

② ~ ⑤ (생략)

제40조(이행강제금) ① (생략)

② 법 제80조제4항 단서에 따른 법 제80조제1항 단서 부분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는 총 3회 이내로 한다.

③ (생략)

<신설>

<신설>

<삭제>

4.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0조(이행강제금)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는 1년에 1회로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는 총 3회 이내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41조(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 3.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

<신 설>

4.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경
우 : 100분의 60

②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
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공사 중인
위반 건축물에 시정명령하였으
나, 공사를 강행하여 건축을 완
료한 경우로 한다.

제42조(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
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기초 및 골조만 완
료 되었을 경우

2. 위반행위자가 「국민기초생
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에 해당하는 경우

3. 마을회관, 노인정 등 주민 공
동소유 및 이용시설

②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남원시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친 남원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7년 6월 16 일

남원시 규칙 제 604 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남원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제7조제2항제3호 중 “7일”을 “3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51조의4에 따라 응시하는 저소득층에 속하는”을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하여야 한다.”를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17조제8항 중 “별표 5의3과 같다.”를 “별표 5의3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4와 같다.”로 한다.

제22조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 2, 3, 4, 5의2, 5의4, 6, 7, 7의2, 7의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 8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 · 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

(제17조제4항, 제5항 및 제21조제1항 관련)

| 직렬 | 계급 | | 연구관·연구사 |
|------|------|---|--|
| | 직렬 | 직류 | |
| 학예연구 | 학예일반 | 국어국문학,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문헌정보학, 서지학,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건축학(건축사를 포함한다), 연극학, 공연예술학, 무용학, 생물학, 지질학, 음악, 지리학, 조경학, 가정학(의생활·식생활·주생활분야 등 생활과학 분야를 포함한다)을 전공한 자 | |
| | | 미술 |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미술관학, 예술학 또는 미학을 전공한 자 |
| | | 국악 | 국악 또는 한국무용을 전공한 자 |
| | | 국어 | 국어국문학, 국어정책학 또는 언어학을 전공한 자 |
| 편사연구 | 편사 | 역사학을 전공한 자 | |
| 기록연구 | 기록관리 | 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자 | |
| 공업연구 | 기계 | 정밀기계공학, 기계공학, 기계설계학, 제어계측공학, 항공우주공학 또는 조선공학을 전공한 자 | |
| | | 전기 | 전기공학, 전자공학, 통신공학 또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자 |
| | | 전자 | |
| | 금속 | 금속공학 또는 금속재료공학을 전공한 자 | |
| | 섬유 | 섬유공학을 전공한 자 | |
| | 화학 |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농화학, 재료공학, 고분자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생물학, 생물공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단백질공학, 생물정보학 또는 환경공학을 전공한 자 | |
| | | 산업경영 | 산업경영학, 산업공학, 공업경영학 또는 산업통계학을 전공한 자 |
| | 물리 | 물리학, 응용물리학 또는 원자력공학을 전공한 자 | |

| 직렬 | 계급 | | 연구관·연구사 |
|------|------|----|---|
| | 직렬 | 직류 | |
| 농업연구 | 작 | 물 | 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환경학, 원예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기상학, 수자원학, 약학, 한약학, 환경공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천연물화학 또는 관계배수학을 전공한 자 |
| | 농업환경 | | 농학, 자원식물학, 식물학, 원예학, 농화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생화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수자원학 또는 관계배수학을 전공한자 |
| | 작물보호 | | 농화학, 농생물학, 환경학, 환경공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미생물학, 작물보호학, 식물병리학, 곤충학, 농학, 원예학 또는 분자생물학을 전공한 자 |
| | 농업경영 | | 농업경영학, 농경제학, 축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자원경제학 또는 통계학을 전공한 자 |
| | 잠업곤충 | | 잠사학, 천연섬유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농공학, 곤충학, 생물학, 천연고분자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화학, 농화학, 유전공학 또는 약학을 전공한 자 |
| | 원 | 예 | 원예학, 조경학, 농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농생물학 또는 식품가공학을 전공한 자 |
| | 생명유전 | |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미생물학, 식물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화학공학, 농학, 원예학, 농화학, 생물공학, 천연물화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정보학을 전공한 자 |
| | 농촌생활 | | 식품학, 식품가공학, 생화학, 피복과학, 조경학, 농촌계획학, 산업공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경제학, 농촌관광학, 산업보건학, 또는 경영학을 전공한 자 |
| | 축 | 산 | 축산학, 축산경영학, 수의학, 식품가공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생화학, 환경공학 또는 유전공학을 전공한 자 |
| | 농 | 공 | 농공학, 건축공학, 기계공학, 재료공학, 토목공학, 농업기계공학, 전기공학, 식품가공학, 환경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자 |
| | 농식품 | 개발 | 식품학, 식품영양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식품위생학, 식품화학, 식품생물공학, 식품효소공학, 식품미생물학, 생화학, 농화학, 단백질공학, 식품저장학, 천연물화학, 육가공학, 유가공학 또는 조리과학을 전공한 자 |
| 녹지연구 | 임 | 업 |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화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생물화학공학, 생물공학, 농생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유전공학, 조경학, 생물학, 임업경제학, 임업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원예학 또는 식물자원학을 전공한 자 |
| | | 조 | |
| 수의연구 | 수 | 의 | 축산학, 수의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의학, 한의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자 |

| 직렬 | 계급 | | 연구관·연구사 |
|------------|------|----|---|
| | 직렬 | 직류 | |
| 해양수산 연구 | 해양환경 | | 해양학, 해양공학, 환경공학, 해양오염학, 화학, 지구과학, 지구물리학, 지리정보학, 해양원격탐사학, 해양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자 |
| | 수산자원 | | 수산자원학, 어장학, 해양생산관리학, 해양생물학, 생물통계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자 |
| | 수산양식 | | 수산양식학, 수산자원학, 어병학, 해양오염학, 해양생물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자 |
| | 수산공학 | | 해양학, 어구어법학, 어구공학, 어업기기학, 해양생물학, 수산토목학, 해양공학, 조선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자 |
| | 수산가공 | |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산가공학, 수산화학, 생화학, 생명공학 또는 미생물학을 전공한 자 |
| | 수산경제 | | 수산경제학, 수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또는 자원경제학을 전공한 자 |
| 보건연구 | 의학 | |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수의학, 미생물학, 생리학 또는 생화학을 전공한 자 |
| | 약학 | | 보건학, 약학, 한약학, 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화학을 전공한 자 |
| | 공중보건 | |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한 자 |
| 환경연구 | 환경 | |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자 |
| 시설연구 | 토목 | | 토목공학, 건설도시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또는 산업공학을 전공한 자 |
| | 건축 | | 건축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산업공학 또는 조경공학을 전공한 자 |

비 고 : 위 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별표 3]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

(제17조제4항, 제5항 및 제21조제1항 관련)

| 직렬 | 계급 | | 지 도 관 | 지 도 사 |
|------|---------------------------------|--|--|---|
| | 직류 | | | |
| 농촌지도 | 전 직 류 (농촌생활 직류는 제외한다.) | |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을 전 공한 자 |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 학이상 졸업자 |
| | 농촌생활 | |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 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 학(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을 전공한 자 |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 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 학(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
| 어촌지도 | 어 촌 | | 수산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자 | 수산 또는 해양계통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

- 비 고 : 1. 위 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에 따른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 다만, 관련 계통 대학에 편입한 자는 당해 관련 계통의 대학을 수료하거나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단서조항은 2018년 지도사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전직시험부터 적용함>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 관련)

| 직렬 | 계급 | | 5급이상 | 6·7급 | 8·9급 |
|------|------|---|---|---|---|
| | 직렬 | 직류 | | |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사회복지사 1급 | 사회복지사 2급 | 사회복지사 3급 |
| 전 산 | 전 산 | 전 산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u>정보보안</u>)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u>정보보안</u>)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u>정보보안</u>)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u>정보보안</u>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 사 서 | 사 서 | 사 서 | 1·2급 정사서 | 1·2급 정사서, 준사서 | 1·2급 정사서, 준사서 |
| 속 기 | 속 기 | 속 기 | 한글속기 1급 | 한글속기 1·2급 | 한글속기 1·2·3급 |
| 수 의 | 수 의 | 수 의 | 수의사 | 수의사 | |
| 의 무 | 일반의무 | 의사, 한의사 | | | |
| | | 치 무 | 치과의사 | | |
| 약 무 | 약 무 | 약사, 한의사, 한약사 | | 약사, 한의사, 한약사 | |
| | | 약 제 | | | |
| 간 호 | 간 호 | 간 호 | 조산사, 간호사 | 조산사, 간호사 | 조산사, 간호사 |
| 보건진료 | 보건진료 | 보건진료 | 조산사, 간호사 | 조산사, 간호사 | 조산사, 간호사 |
| 해양수산 | 일반선박 |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관사1급 내지 2급 |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 |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6급 기관사1급 내지 6급 | |
| | | 선박항해 |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2급 |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4급 |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6급 |
| | | 선박기관 |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2급 |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4급 |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6급 |

| 직렬 | 계급 | | 5급이상 | 6·7급 | 8·9급 |
|------|------|----|--|--|--|
| | 직렬 | 직류 | | | |
| 항공 | 일반항공 | |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 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 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 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 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 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 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 가용조종사 |
| | 조종 | |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
| | 정비 | |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
| 시설 | 지적 | |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
| 의료기술 | 의료기술 |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 의무기록사, 안경사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 의무기록사, 안경사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 의무기록사, 안경사 |
| 위생 | 위생 | | | 위생사 영양사 | 위생사 영양사 |
| | 사역 | | | 영양사 | 영양사 환경기능사 |
| 조리 | 조리 | | | 조리기능장 |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
| 간호조무 | 간호조무 | | | | 간호조무사 |
| 운전 | 운전 | | | |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

- 비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수직급의 신규
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신설 2006. 2. 15>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4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제17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 직 렬 | 직 류 | 대 상 자 격 증 |
|-----|------|---|
| 행 정 | 운 수 | 산업기사 : 철도운송 |
| 전 산 | 전 산 |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u>정보보안</u>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u>정보보안</u> |
| 공 업 | 일반기계 | 기술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
| | 농업기계 |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u>판금제관</u> ,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
| | 기계운전 | 기술사: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u>판금제관</u> ,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
| | 조 선 | 기술사: 조선 기사: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기능사: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
| | 일반전기 | 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기능사: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

| 직 렬 | 직 류 | 대 상 자 격 증 |
|-----|--|--|
| | 전 자 | 기술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능장 : 전자기기 기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품질경영 기능사 :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카드 |
| | 원 자 력 | 기술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
| | 금 속 | 기술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
| | 야 금 | 기능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
| | 섬 유 | 기술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능사 : 염색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
| | 일반화공 | 기술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 : 위험물, 가스 기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능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
| 자 원 | 기술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기능사 : 시추, 광산보안, 환경, 화약취급 | |
| 농 업 | 일반농업 |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
| | 잠 업 | 기사 :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
| | 농 화 학 | 기술사 : 시설원예, 축산, 산림,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산업기사 :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 원예, 버섯종균, 축산, 식품가공 |

| 직 렬 | 직 류 | 대 상 자 격 증 |
|------|-------|--|
| | 식물검역 |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림, 생물공학, 임업종묘, 유기농업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산림,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
| | 축 산 | 기술사 : 축산, 식품 기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
| | 생명유전 | 기술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 종자, 식품 기능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
| 녹 지 | 조 경 | 기술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 기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 산림, 조경 |
| | 산림자원 | 기술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 : 산림 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능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
| | 산림보호 | 기술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 : 산림 기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립토양평가관리 기능사 : 산림 |
| | 산림이용 | 기술사 : 산림 기능장 : 산림 기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기능사 : 산림, 임산가공 |
| 해양수산 | 일반해양 | 기술사 : 해양, 수질관리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 잠수 |
| | 일반수산 | 기술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기능사 : 수산양식, 식품가공 |
| | 수산제조 | 기술사 : 수산제조, 식품 기사 : 수산제조, 수산양식, 식품, 생물공학 |
| | 수산물검사 | 산업기사 : 식품 기능사 : 식품가공 |
| | 수산증식 | 기술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능사 : 수산양식 |

| 직 렬 | 직 류 | 대 상 자 격 증 |
|------|---------|---|
| | 어 로 | 기 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
| | 일반선박 |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
| | 선박항해 | 기 술 사 : 조선 기 사 : 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 : 조선, 항로표지 |
| | 선박기관 |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
| | 해양교통시 설 | 기술사: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능장: 전기, 전자기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기능사: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
| 보 건 | 보 건 |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식품가공 |
| 의료기술 | 의료기술 | 기 술 사 : 방사선관리, 기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 |
| 식품위생 | 식품위생 | 기 술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 :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능사: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
| 환 경 | 일반환경 | 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 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조경, 산림, 환경 |

| 직 렬 | 직 류 | 대 상 자 격 증 |
|-----|-------|---|
| | 수 질 | <p>기 술 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p> <p>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p> <p>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p> <p>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p> |
| | 대 기 | <p>기 술 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p> <p>기 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p> <p>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p> <p>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p> |
| | 폐 기 물 | <p>기 술 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p> <p>기 사 : 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p> <p>산업기사 :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p> <p>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p> |
| 항 공 | 일반항공 | <p>기 술 사 : 항공기관, 항공기체</p> <p>기 사 : 항공</p> <p>산업기사 : 항공</p> |
| | 정 비 | |
| 시 설 | 도시계획 | <p>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p> <p>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p> <p>기 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p> <p>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p> <p>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p> |
| | 일반토목 | <p>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
| | 농업토목 | <p>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p> <p>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
| | 건 축 | <p>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p> <p>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p> <p>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p> |

| 직 렬 | 직 류 | 대 상 자 격 증 |
|------|-------------|---|
| | 지 적 | 기 술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
| | 측 지 | 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
| | 교통시설 |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 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 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
| | 도시교통 설 계 |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
| 방송통신 | 통신사 | 기 술 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 능 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
| | 통신기술 | 기 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
| | 전송기술 |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 송통신, 정보처리 |
| | 전자통신 기 술 | 기능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 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
| 조리 | 조리 | 기능장 : 조리 산업기사 :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기능사 :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
| 위생 | 사역 | 기능사 : 환경기능사 |
| 시설관리 | 시설관리 |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 : 전기, 기계정비, 조경 |

2.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 직렬 | 계급 |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 | 직렬 | 직류 | | | | | |
| 행정 | 일반행정 | 법무행정 | 변호사, 변리사(4) | 변리사 | | | |
| | | 재경 |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 감정평가사 | | |
| | 국채통상 | 노동 | 변호사 공인노무사(7) 직업상담사2급 (10) | 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2급(6) |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3) | 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사2급(3) | 직업상담사2급 |
| | | 문화홍보 | 변호사 | | | | |
| | 기업행정 | 운수 |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세무사(7) |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세무사(3) | 감정평가사 세무사 | | |
| | | 감사 |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감정평가사(7) | 공인회계사 세무사(3) 감정평가사(3) | 세무사 감정평가사 | | |
| | 세무 | 지방세 |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 공인회계사 세무사(3) | 세무사 | | |
| | | 교육행정 | 변호사 | | | |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7) | 사회복지사 1급(3) | 사회복지사 1급 | 사회복지사 2급 | 사회복지사 3급 | |
| 전산 | 전산 | |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9) |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6) |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3) |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 |
| 사서 | 사서 | 1급 정사서(5) |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 | 2급 정사서(3) | 2급 정사서 | 준사서 | |

| 직렬 | 계급 |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 | 직렬 | 직류 | | | | | |
| 공 업 | 일반전기 | | | | 무대조명전문인1급 | 무대조명전문인2급 | 무대조명전문인3급 |
| | 일반기계 | | | | 무대기계전문인1급 무대음향전문인1급 | 무대기계전문인2급 무대음향전문인2급 | 무대기계전문인3급 무대음향전문인3급 |
| | 원 자 력 | 원자로조종 감독자(5),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 원자로조종 감독자, 원자로조종 사(3),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 취급자(3),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3), 방사선취급 감독자 |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 취급자,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 | | |
| 농 업 | 축 산 | 수의사(7) | 수의사(3) | 수의사 | 가축인공수정사 | | |
| 수 의 | 수 의 | 수의사(7) | 수의사(3) | 수의사 | | | |
| 해양수산 | 일반수산 | 수산질병관리사(7) 수의사(7) | 수산질병관리사(3) 수의사(3) | 수산질병관리사 수의사 | | | |
| | 일반선박 | 1급 항해사(3) 1급 기관사(3) |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 |
| 해양수산 | 선박항해 | 1급 항해사(3) |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 |
| | 선박기관 | 1급 기관사(3) |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 |
| 보 건 | 보 건 |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약사(7) 한약사(7) 조산사(12) 간호사(12) 보건교육사1급(7) | 수의사(3) 약사(3) 한약사(3) 조산사(6) 간호사(6) 보건교육사1급(3) | 수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3) 간호사(3) 보건교육사1급 | 조산사 간호사 보건교육사2급 | 보건교육사3급 | |
| | 방 역 | 의사(2) 한의사(2) 수의사(7) 약사(7) 간호사(12) | 수의사(3) 약사(3) 간호사(6) | 수의사 약사 간호사(3) | 간호사 | | |
| 식품위생 | 식품위생 | 위생사(12) 영양사(12) | 위생사(8) 영양사(8) | 위생사(5) 영양사(5) | 위생사(2) 영양사(2) | 위생사 영양사 | |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 종류 | 임용등급 | 자 격 기 준 |
|--------------|------|--|
| 시간선택제 임기제 | 가급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나급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다급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라급 |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마급 |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한시 임기제 | 5호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6호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7호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8호 |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9호 |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 종 류 | 임용등급 | 자 격 기 준 |
|--------------------|------|--|
| 시 간 선 택 제 임 기 제 | 가급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나급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다급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라급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
| | 마급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 한 시 임 기 제 | 5호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6호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7호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 8호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 |
| | 9호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5의4]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제17조 관련)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 종류 | 임용등급 | 자 격 기 준 |
|-------|------|--|
| 전문임기제 | 가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 나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 종류 | 임용등급 | 자 격 기 준 |
|-------|------|---|
| 전문임기제 | 가급 | 1.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나급 | 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 종류 | 임용등급 | 자 격 기 준 |
|-------|------|--|
| 전문임기제 | 가급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 | 나급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별표 6]<개정 2013.1.11., 2016. 5. 1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과 전직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

(제17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 제3항 관련)

1. 연구직 공무원

| 직렬 | 계급 | | 연 구 관 | 연 구 사 |
|------|-------------------|---|--|-------|
| | 직류 | | | |
| 공업연구 | 기 계 |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승강기) | |
| | | 전 기 |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 |
| | 전 자 | 기술사(산업제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 |
| | 금 속 |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채련, 비파괴검사) |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 |
| | 섬 유 | 기술사(섬유, 의류) | 기사(섬유, 의류) | |
| | 화 공 | 기술사(화공, 세라믹, 식품) |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식품) | |
| | 화 학 | | | |
| | 산업경영 | 기술사(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 기사(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 |
| 물 리 |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 기사(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 | | |
| 농업연구 | 작 물 |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약사(7) |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약사 | |
| | | 농업환경 |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생물공학,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기상예보) 약사(7) | |
| | 원 예 |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 |
| | 생명유전 | 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 | 기사(종자, 식품, 생물공학) | |
| | 농촌생활 | 기술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화학) 평생교육사 1급, 사회복지사 1급(7) | 기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생물공학) 평생교육사 2급, 사회복지사 1급,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3), 영양사(5), 위생사(5) | |

| 직렬 | 계급 | | 연 구 관 | 연 구 사 |
|------------|-----------|--|--|--|
| | 직류 | | | |
| 농업연구 | 축 산 | |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 |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물공학, 유기농업) 수의사 |
| | 농 공 | |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용접, 금형,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 발, 농어업토목, 조정, 기계안전, 화공 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건설기계, 토질 및 기초, 토 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 기계, 건설기계정비, 퀘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 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 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정,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 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자동차 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재료시 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 | 농식품 개발 | | 기술사(식품, 축산, 농화학) | 기사(식품, 생물공학), 영양사(5), 위생사(5) |
| 녹지연구 | 임 업 | | 기술사(조정, 종자, 산림, 농화학) | 기사(조정,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 호, 임산가공, 토양환경) |
| | 조 경 | | | |
| 수의연구 | 수 의 | | 기술사(축산) 수의사(7) | 기사(축산) 수의사 |
| 해양수산 연구 | 해양환경 | | 기술사(해양, 수질관리) |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질환경) |
| | 수산자원 | |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
| | 수산양식 | | 기술사(수산양식, 수질관리) | 기사(수산양식, 수질환경, 생물공학) |
| | 수산공학 | | 기술사(해양, 어로) | 기사(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
| | 수산가공 | |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 기사(수산제조, 식품, 생물공학) |
| | 수산경제 | |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 기사(수산제조, 식품, 생물공학) |
| 보건연구 | 의 학 | |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
| | 약 학 | | 약사(7), 한의사(2), 한약사(7) | 약사, 한의사, 한약사 |
| | 공중보건 | | 기술사(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대기 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약사(7), 한약사(7), 수의사(7), 전문간호 사(7),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 선취급감독자(5) |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간호사(3), 조산사(3),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 병리사(5), 의무기록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 (5), 작업치료사(5), 위생사(5), 영양사(5) |

| 직렬 | 직류 | 계급 | |
|------|----|---|---|
| | | 연구관 | 연구사 |
| 환경연구 | 환경 | 기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의사(2), 약사(7), 수의사(7), 환경측정분석사(7) |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의사, 약사, 수의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
| | | 기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
| 시설연구 | 건축 | 기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비 고 : 1. 직류별로 연구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연구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경력경쟁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3년, 기타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 자격증 소지 후 ()안의 기간(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4.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지도직 공무원

| 직렬 | 직류 | 계급 | 지 도 관 | 지 도 사 | |
|------|----|----|--|--|---|
| 농촌지도 | 농 | 업 |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생물공학,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 |
| | | 임 |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 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 |
| | | 잠 | 기술사(생사) | 기사(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6) ※1999.3.27이전 취득 | |
| | | 원 | 예 |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생물공학,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
| | | 축 | 산 |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 |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물공학, 유기농업)수의사 |
| | | 가 | 축 | 기술사(축산) 수의사(7) | 기사(축산) 수의사 |
| | | 농 | 촌 | 평생교육사 1급 | 청소년지도사(5), 평생교육사2급 |
| | | 농 | 업 |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승강기) |
| | | 농 | 업 |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기반, 건설안전, 교통) |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
| 농촌생활 | 농 | 촌 | 기술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 1급 | 기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2급, 위생사(5), 영양사(5) | |
| | | 어 | 촌 |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수산질병관리사(7) |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수산질병관리사 |

비 고 : 1. 직류별로 지도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지도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 경력경쟁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3년, 기타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안의 기간(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7]<개정 2013.1.11., 2014.1.17., 2014.6.13., 2014.7.18., 2016. 5. 13.>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

(제21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 직렬 | 계급 | | 5급이상 | 6·7급 | 8·9급 |
|------|------|------|--|--|---|
| | 직렬 | 직류 | | | |
| 행정 | 행정 | 수 | | | 산업기사(철도운송),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 사회복지사 1급 | 사회복지사 2급 | 사회복지사 3급 |
| 전산 | 전산 |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 사서 | 사서 | | 1급 정사서 | 2급 정사서 | 준사서 |
| 속기 | 속기 | | 한글속기 1급 | 한글속기 1·2급 | 한글속기 1·2·3급 |
| 공업 | 일반기계 | |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웨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웨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영사, 소방설비:기계분야), 사진기능사 |
| | | 농업기계 | | | |
| | 기계운전 | | 기술사(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 기능장(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웨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웨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철도교통안전관리자 |
| | | 일반전기 |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기철도, 소방설비:전기분야) |

| 직렬 | 계급 | | 5급이상 | 6·7급 | 8·9급 |
|----|------|---|--|--|------|
| | 직류 | | | | |
| | 전자 |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 기능장(전자기기)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반도체설계) | 산업기사(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 |
| | 원자력 |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 기사(원자력, 에너지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 | |
| | 금속 |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 |
| | 야금 | | | | |
| | 섬유 | 기술사(섬유, 의류, 품질관리) | 기사(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생사기사2급(19 99. 3. 27 이전 취득) | 산업기사(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 |
| | 일반화공 | 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화학분석,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 산업기사(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 |
| 공업 | 가스 | 기술사(화공안전) |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공, 산업안전, 가스) | 산업기사(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 |
| | 자원 | 기술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및지반, 광해방지) | 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응용지질 광해방지) | 산업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 |
| 농업 | 일반농업 |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 산업기사(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 |
| | 잠업 | | 기사(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 | |
| | 식물검역 |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토양환경, 산림, 생물공학, 유기농업) |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 |
| | 농화학 | 기술사(농화학) | | | |

| 직렬 | 계급 | | 5급이상 | 6·7급 | 8·9급 |
|------|-------|---|---|--|---|
| | 직류 | | | | |
| | 축 산 | | 기술사(축산, 식품) 수의사 | 기사(축산, 식품) |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
| 녹 지 | 산림자원 | |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 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 산업기사(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
| | 산림보호 | |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 기능장(산림) 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 산업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
| | 산림이용 | | 기술사(산림) | 기사(산림, 임산가공) | 산업기사(산림 임산가공) |
| | 조 경 | | 기술사(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 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 산업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
| 수 의 | 수 의 | | 수의사 | | |
| 해양수산 | 일반해양 | |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 |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
| | 일반수산 | | | | |
| | 수산제조 | | | | |
| | 수산증식 | | | | |
| | 어 로 | | | | |
| | 수산물검사 | | | | |
| | 해양교통 | | | | |
| | 시 설 | | | | |
| 일반선박 | |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2급 항해사 12급 기관사 | 기사(일반기계, 조선)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 |
| 선박항해 | | 기술사(조선) 12급 항해사 | 기사(조선, 항로표지) 34급 항해사 |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 |
| 선박기관 | |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2급 기관사 | 기사(일반기계) 34급 기관사 |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5·6급 기관사 | |
| 보 건 | 보 건 | |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전문간호사 |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위생사, 영양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임상심리사1급, 응급구조사1급 |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2급, 응급구조사2급 |
| | 방 역 | | <u>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전문간호사</u> | <u>간호사</u> | |
| 식품위생 | 식품위생 | | 기술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 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영양사, 위생사 | 산업기사(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
| 위 생 | 위 생 | | | 위생사 영양사 | 위생사 영양사 |
| | 사 역 | | | 영양사 | 영양사 환경기능사 |

| 직렬 | 계급 | | 5급이상 | 6·7급 | 8·9급 |
|------|-------|--|---|---|--|
| | 직류 | | | | |
| 의료기술 | 의료기술 | | 기술사(방사선관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전문간호사, 방사성동 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 급감독자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 사, 물리치료사, 치과기사, 치 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1급, 의자보 조기사 | 응급구조사2급 |
| 의 무 | 일반의무 | | 의사, 한의사 | | |
| | 치 무 | | 치과의사 | | |
| 약 무 | 약 무 | | 약사, 한의사, 한약사 | | |
| | 약 제 | | | | |
| 간 호 | 간 호 | | | 간호사, 조산사 | |
| 간호조무 | 간호조무 | | | | 간호조무사 |
| 보건진료 | 보건진료 | | | 간호사, 조산사 | |
| 환 경 | 일반환경 | |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 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폐기물 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의사, 약사, 수의사 |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 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 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위생사 | 산업기사(조경, 산림, 식물보 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 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 리, 자연생태복원) |
| | 수 질 | | 기술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 기사(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 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 해방지) 위생사 | 산업기사(산림, 해양조사, 수 산양식, 수질환경) |
| | 대 기 | | 기술사(산림, 대기관리, 소음 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 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기상, 응용지질) | 산업기사(산림, 대기환경, 소 음진동) |
| | 폐 기 물 | | 기술사(화공, 산림, 상하수도,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 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 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 기사(화공, 원자력, 에너지관 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 2급 | 산업기사(화공, 산림, 에너지관 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
| 항 공 | 일반항공 | |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운송용조종사 | 기사(항공)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 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 교통관계사, 항공기관사, 운항 관리사 | 산업기사(항공) 자가용조종사 |
| | 조 종 | | 운송용조종사 |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 자가용조종사 |
| | 정 비 | |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 산업기사(항공) |
| 시 설 | 도시계획 | |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조경, 지적, 교통) |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 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

| 직렬 | 계급 | | 5급이상 | 6·7급 | 8·9급 |
|------|--------|--|--|---|--|
| | 직류 | | | | |
| | |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지질및지반) 건축사 | 지적, 교통, 응용지질) | |
| | 일반토목 | |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광해방지) |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
| | 수도토목 | |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 | |
| | 농업토목 | |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
| 건축 | | |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 | 지적 | |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
| | 측지 | |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
| | 교통시설 | | 기술사(토지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지질및지반) |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
| | 도시교통설계 | | 교통, 지질및지반) | | |
| | 디자인 | | 기술사(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 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 산업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
| 방송통신 | 통신사 | | 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 |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계산기, 무선설비, 정보처리) | 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통신선로, 무선설비, 방송통신) |
| | 통신기술 | | | | |
| | 전송기술 | | | | |
| | 전자통신기술 | | | | |
| 조리 | 조리 | | | 조리기능장 |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
| 시설관리 | 시설관리 | | |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

| 직렬 | 직류 | 계급 | | |
|-----|-----|------|------------|---|
| | | 5급이상 | 6·7급 | 8·9급 |
| | | | 기계분야>, 조정) | 기능사(전기, 기계정비, 조정) |
| | 운 전 | | |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
| 운 전 | | | | |

- 비 고 : 1. 직류별로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하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7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7의2]<개정 2013.1.11>

통신 ·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비율표
(제16조 관련)

| 직무분야 | 임용계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 |
|--------------|------------------------------------|--|----|--|------|
| 통신정보 처리분야 | 일반직6·7급, 연구사, 지도사 전문경력관 나군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 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 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 0.5% |
| | 일반직 8·9급 전문경력관 다군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 사무 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 산업기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 사무관리 분야 | 일반직 6급이하, 연구사, 지도사 전문경력관 나다군 | 컴퓨터활용능력1급 | 1%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2급 | 0.5% |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신설 2006. 2.15> <개정 2016.12.30.>

[별표 7의4]<개정 2013.1.11.,2013.7.19., 2014.1.17., 2014.6.13., 2016. 5. 13.>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6조 관련)

가.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 직 렬 | 직 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
|------|-------|---|----------------------------------|
| 행 정 | 일반행정 | - | 변 호 사 변 리 사 |
| | 법무행정 | | |
| | 재 경 | -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
| | 국제통상 | | |
| | 노 동 |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 변 호 사 공인노무사 |
| | 문화홍보 | - | 변 호 사 |
| | 감 사 | -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
| | 기업행정 |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
| | 운 수 | 산업기사 : 철도운송 |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 관리자 |
| 세 무 | 지 방 세 | -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
| 교육행정 | 교육행정 | | 변 호 사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 | 변 호 사 |
| 공 업 | 일반기계 |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 |
| | 농업기계 | | |

| | | | |
|--------|------|--|-----------------------------------|
| 공 업 | | <p>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 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p> <p>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 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p> | |
| | 기계운전 | <p>기 술 사 :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p> <p>기 능 장 :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p> <p>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p> <p>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운송,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p> <p>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블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 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p> | 산업기사자격 증가산비율: 철도교통안전 관리자 |
| | 조 선 | <p>기 술 사 : 조선</p> <p>기 사 : 일반기계, 조선</p> <p>산업기사 : 조선, 컴퓨터응용가공</p> <p>기 능 사 :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p> | |
| | 일반전기 | <p>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전기신호,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p> <p>기 능 장 : 전기</p> <p>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p> <p>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p> <p>기 능 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p> | |

| | | | |
|--------|-------|---|--|
| 공 업 | 전 자 | <p>기술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능장 : 전자기기 기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기능사 :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카드</p> | |
| | 원 자 력 | <p>기술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p> | <p>기사자격증 (신비율 적용 :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취급자</p> |
| | 금 속 | <p>기술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p> | |
| | 야 금 | <p>기능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p> | |
| | 섬 유 | <p>기술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능사 : 염색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p> | |
| | 일반화학 | <p>기술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 : 위험물, 가스 기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능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p> | |
| | 자 원 | <p>기술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기능사 : 시추, 광산보안, 화약취급, 환경</p> | |

| | | | |
|----|------|---|---|
| 농업 | 일반농업 | <p>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p> |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농산물품질관리 사</p> |
| | 잡업 | <p>기사 :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p> | |
| | 식물검역 | <p>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토양환경, 산림, 생물공학, 유기농업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p> | |
| | 농화학 | <p>기술사 : 시설원예, 축산, 산림,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산업기사 :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 원예, 버섯종균, 축산, 식품가공</p> | |
| | 축산 | <p>기술사 : 축산, 식품 기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p> |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수의사, 방사성 동위원소취급자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가축인공수정사</p> |
| | 생명유전 | <p>기술사 :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기사 :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생물공학 산업기사 : 종자,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p> | <p>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방사성 동위원소취급자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p> |
| 녹지 | 산림자원 | <p>기술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 :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능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p> | |
| | 산림보호 | <p>기술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능사 : 산림</p> | |
| | 산림이용 | <p>기술사 : 산림 기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기능사 : 산림, 임산가공,</p> | |
| | 조경 | <p>기술사 :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기능사 : 조경, 산림</p> | |

| | | | |
|------|--------------|--|--|
| 해양수산 | 일반해양 | 기 술 사 : 해양,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 기 능 사 : 잠수 | |
| | 일반수산 |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 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기 능 사 : 수산양식, 식품가공 |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수산물품질관리사 |
| | 수산제조 | 기 술 사 : 수산제조, 식품 기 사 : 수산제조, 식품, 생물공학, 수산양식 산업기사 : 식품 기 능 사 : 식품가공 | |
| | 수 산 물 검 사 | | |
| | 수산증식 | 기 술 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 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 능 사 : 수산양식 | |
| | 어 로 | 기 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 |
| | 해양교통 시 설 | 기 술 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 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능 장 : 전기, 전자기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항로표지 기 능 사 :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 |
| 보 건 | 보 건 |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 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 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 처리, 식품 기 능 사 : 식품가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 약사,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 급감독자, 응급구 조사 1급, 보건교 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의무 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 기공사, 치과위생 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보건교육사2급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교육사3급 |

| | | | |
|------|------|--|--|
| 보 건 | 방 역 | |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수의사, 약사, 응급구조사 1급</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간호사, 위생사, 응급구조사 2급</p> |
| 식품위생 | 식품위생 | <p>기술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p> <p>기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p> <p>산업기사 :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p> <p>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p> | <p>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영양사, 위생사</p> |
| 의료기술 | 의료기술 | <p>기술사 방사선관리</p> <p>기사 : 의공</p> <p>산업기사 : 의공</p> <p>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p> |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1급</p> <p>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 2급, 의지보조기기사</p> |
| 환 경 | 일반환경 | <p>기술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p> <p>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토양환경,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기상, 광해방지</p> <p>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p> <p>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p> |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대기수질)</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p> |

| | | | |
|-----|-------|--|---|
| 환 경 | 수 질 | <p>기술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p> <p>기사 : 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p> <p>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p> <p>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p> | <p>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환경측정분석사(수질환경 분야로 한정한다), 장기설업연단사1급</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장기설업연단사2급</p> <p>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3급</p> |
| | 대 기 | <p>기술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p> <p>기능장 : 산림</p> <p>기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p> <p>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p> <p>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p> | <p>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환경측정분석사(대기)</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p> |
| | 폐 기 물 | <p>기술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p> <p>기능장 : 산림</p> <p>기사 : 화공, 농화학,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p> <p>산업기사 : 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p> <p>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p> |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p> |
| 시 설 | 도시계획 |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p> <p>기능장 : 건축일반시공</p> <p>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p> <p>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p> <p>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p> |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p> |
| | 일반토목 |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 |
| | 농업토목 |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 |

| | | | |
|------|---|--|-----------------------------|
| 시 설 | 건 축 | <p>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p> <p>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p> <p>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p> |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건축 사 |
| | 측 지 | <p>기술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p> <p>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p> <p>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p> <p>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p> | |
| | 교통시설 |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p> | |
| | 도시교통 설 계 |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p> | |
| 디자인 | <p>기술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p> <p>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p> <p>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p> <p>기능사 :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p> |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건축 사 | |
| 방송통신 | 통신사 | <p>기술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p> <p>기능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p> | |
| | 통신기술 | <p>기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p> | |
| | 전송기술 | <p>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p> | |
| | 전자통신 기 술 | <p>기능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 6. 1이전 취득)</p> | |
| 시설관리 | 시설관리 | <p>기능장 : 전기</p> <p>기사 :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p> <p>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p> <p>기능사 : 전기, 기계정비, 조경</p> | |

- 비 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방호 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을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함

나. 연구지도직

| 직 렬 | 직 류 | 국가기술훈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
|------|------|--|---------------|
| 공업연구 | 기계 |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 |
| 농촌지도 | 농업기계 | 기 능 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 윤활관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 |
| 공업연구 | 전기 |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 |
| | 전자 | 기 술 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 |

| | | | |
|------|-------|--|-----------------------------------|
| 공업연구 | 금속 | <p>기술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p> <p>기능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p> <p>기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금속제련,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p> | |
| | 섬유 | <p>기술사 : 섬유, 생사, 의류, 품질관리</p> <p>기능장 : 염색</p> <p>기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편물, 산업안전, 품질경영</p> | |
| | 화학 | <p>기술사 : 화학, 세라믹, 화학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p> <p>기능장 : 위험물, 가스</p> <p>기사 : 화약류제조, 화학,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p> <p>산업기사 : 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p> | |
| | 산업경영 | <p>기술사 : 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학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p> <p>기사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p> <p>산업기사 : 제품디자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p> | |
| | 물리 | <p>기술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p> <p>기사 : 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p> <p>산업기사 : 정밀측정, 전자, 에너지관리</p> | |
| 농업연구 | 농식품개발 | <p>기술사 : 식품, 농화학, 축산</p> <p>기사 : 식품, 생물공학, 축산</p> <p>산업기사 : 식품, 축산, 유기농업</p> |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영양사, 위생사 |
| | 작물 | <p>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p> <p>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p> <p>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p>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농산물품질관리사 |
| 농촌지도 | 농업 | <p>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p> <p>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p> | |

| | | | |
|------|------|---|--|
| 농업연구 | 원 예 |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농화학, 조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 |
| 농촌지도 | 원 예 |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유기농업 | |
| 농업연구 | 농업환경 | 기 술 사 :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 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기상, 유기농업 산업기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유기농업 | |
| | 잡업근충 | 기 술 사 : 생사 기 사 :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 |
| 농촌지도 | 잡 업 | | |
| 농업연구 | 작물보호 |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 |
| | 생명유전 | 기 술 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 종자, 식품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
| | 농촌생활 | 기 술 사 :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
| 농촌지도 | 농촌생활 | 기 사 :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생물공학 |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영양사, 위생사 |
| 농촌지도 | 농업경영 | 산업기사 : 섬유,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 |
| 농촌지도 | 농촌사회 |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청소년지도사 1급, 평생교육사 2급 |

| | | | |
|--------|------|--|---|
| 농업연구 | 농 공 | <p>기술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금속재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정,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인간공학, 소음진동, 금속재료,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p> <p>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정,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자동화정비,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p> <p>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정,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p> |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p> |
| 농업연구 | 축 산 | <p>기술사 : 축산, 식품</p> <p>기사 : 축산, 식품</p> | <p>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수의사,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가축인공수정사</p> |
| 농촌지도 | 축 산 | <p>산업기사 : 축산, 식품</p> | |
| 녹지연구 | 임 업 | <p>기술사 : 조정, 종자, 산림, 농화학</p> <p>기능장 : 산림</p> | |
| | 조 경 | <p>기사 : 조정,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p> | |
| 농촌지도 | 임 업 | <p>산업기사 : 조정,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p> | |
| 수의연구 | 수 의 | <p>기술사 : 축산</p> <p>기사 : 축산</p> | <p>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p> |
| 농촌지도 | 가축위생 | <p>산업기사 : 축산</p> | |
| 해양수산연구 | 해양환경 | <p>기술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p> <p>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p> | |
| | 수산자원 | <p>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p> | |
| 어촌지도 | 어 촌 | <p>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p> | |

| | | | |
|-------------|------|---|---|
| 해양수산 연 구 | 수산양식 | 기 술 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 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 |
| | 수산공학 | 기 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 |
| | 수산가공 | 기 술 사 : 수산제조, 식품 기 사 : 수산제조, 수산양식,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 식품 | |
| 보건연구 | 의 학 | - |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
| | 약 학 | - |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약사, 한의사, 한약사 |
| | 공중보건 |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 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 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 물처리, 식품, 의공 |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 약사,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 급감독자, 응급구 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임상병리사, 의무 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 기공사, 치과위생 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
| 환경연구 | 환 경 | 기 술 사 : 화학,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 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 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화학,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화학, 해양환경, 산업 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 화학,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 생태복원 |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 측정분석사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위생사 |

| | | | |
|------|------|--|-------------------------------------|
| 시설연구 | 토 목 |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 |
| 농촌지도 | 농업토목 |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 |
| 시설연구 | 건축 | <p>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p> <p>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p> <p>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 <p>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p> |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년도 급 공개경쟁채용 면접시험 평정표

| | | | |
|--------------------------------------|---------------------------------|-------|------|
|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 |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 직렬(류) | |
| | 본인필적 : | 응시번호 | |
| | | 성명 | (한글) |
| 생년월일 | | | (한자) |

| 평 정 요 소 | 위 원 평 정 | | |
|--------------------|----------------------|---|---|
| | 상 | 중 | 하 |
|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 | |
|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 | |
|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 | |
|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 | | |
|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 |
| 계 | 개 | 개 | 개 |
| 위 원 서 명 | 성 명 (서명) | | |

| | | | | |
|-----------------------|--|------------------|--------|--|
|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 | 판 정 | 우 수 | |
| | | | 보 통 | |
| | | | 미 흡 | |
|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 | 담 당 확 인 | | |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1) 우수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 (2) 미흡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3) 보통 : “우수”와 “미흡” 외의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년도 제 회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면접시험 평정표

| | | | |
|--------------------------------------|---------------------------------|-------|------|
|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 |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 직렬(류) | |
| | 본인필적 : | 응시번호 | |
| | 생년월일 | 성명 | (한글) |
| | | | (한자) |

| 평 정 요 소 | 위 원 평 정 | | |
|--------------------|-------------|---|---|
| | 상 | 중 | 하 |
|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 | |
|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 | |
|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 | |
|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 | | |
|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 |
| 계 | 개 | 개 | 개 |
| 위 원 서 명 | 성 명 (서 명) | | |

| | | | | |
|-----------------------|--|---------|-----|--|
|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 | 판 정 | 합 격 | |
| | | | 불합격 | |
|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 | 담 당 확 인 | | |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불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생략)</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 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p> <p>1. ~ 7. (생략)</p> <p><신설></p> <p>제7조(응시수수료) ① (생략)</p> <p>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p> <p>1.·2. (생략)</p> <p>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u>7일</u>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u>영 제51조의4</u>에 따라 응시하는 저소득층에</p> | <p>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p> <p>1. ~ 7. (현행과 같음)</p> <p>8. <u>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u></p> <p>제7조(응시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 ----- <u>3일</u> ----- ----- -----</p> <p>③ ----- <u>응시원서 접수</u>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p> |

속하는 사람에 대해 응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매 과목마다)과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각각 2명 이상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 ⑦ (생략)
⑧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3과 같다.

⑨ (생략)

제22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② (생략)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에 대한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은 제1항을 준용한다.

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
-----.

제12조(시험위원) ① -----

-----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별표 5의3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4와 같다.

⑨ (현행과 같음)

제22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② (현행과 같음)
<삭제>

남원시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남원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7년 6월 16 일

남원시 규칙 제 605 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칙 폐지규칙

남원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을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7년 6월 16일

남원시 규칙 제 606 호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운영규모 등) ① 남원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조성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성액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운용 규모를 정하여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단, 사업자금 대여 등 융자금은 기금운용 가능 범위에서 20퍼센트를 추가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기금 조성액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적립된 기금 조성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운용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③ 이때 운용재원은 따로 구분하지 않고, 적극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 조성액에 따른 운용범위·재원 등을 남원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융자받고자 하는”을 “융자받으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담보대출: 융자금액이 금융기관에서 정한 부동산 담보범위에서 담보설정이 가능하거나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제2조제2항 중 “소속사업장”을 “신용보증서, 소속사업장”으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기금의 지급)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기금을 대여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자활기금 대여결정통지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금을 대여하고, 자격 중 취득 장려금 등 자활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자활기금 지원 결정 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107조부터 133조까지에”를 “제107조부터 제133조까지에”로 하고 “남원시 생활보장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6조 중 “제8조의2”를 “제8조 및 제8조의2”로 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기금반환 통보)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제2항 및 제8조의2제4항에 따라 상환 기일 전에 기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금을 대여한 자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자활기금 상환 통지서(별지 제5호 서식)를 발송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내에 대여 받은 기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6조의3(상환기간 연장) ① 시장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4조 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라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별지 제1,2,3,4,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자활기금 대여결정 통지서

1. 대여대상자

- 성 명 (법인·단체명)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전화 :)

2. 대여금액 : 금 원(₩)

3. 대여용도 :

4. 대여조건

- 상환기간 : 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 이 율 : 연 %
- 연체이자 : 연 %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귀하(법인·단체)를 년도 자활기금 대여대상자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직인

[별지 제2호 서식]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서

1. 지원대상자

- 성 명 (법인·단체명)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전화 :)

2. 지원금액 : 금 원 (₩)

3. 지원용도 :

4. 지원조건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특기사항 : 위의 지원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가.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지원금의 교부조건 내용 또는 법령에 시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라. 해당 자활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체조건이 사후적으로 미 충족된 경우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귀하(법인·단체)를년도 자활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남 원 시 장 직인

[별지 제4호 서식]

자활기금 대여자금 상환카드(제4조 관련)

기금대여상황

| | | | | | | |
|-------|------|--|-------|-------------|------|--|
| 용 자 | 대여번호 | | 생년월일 | . . . (남/여) | | |
| | 성 명 | | 전화번호 | | | |
| 대 상 자 | 자금용도 | | 주 소 | | | |
| | 대여일자 | | 대여금액 | | 약정일자 | |
| | 상환조건 | | 이 자 율 | | 상환기간 | |
| 보 증 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 . (남/여) | | |
| | 전화번호 | | 주 소 | | | |
| | 성 명 | | 생년월일 | . . . (남/여) | | |
| | 전화번호 | | 주 소 | | | |

상환내역

| 회차 | 상환 예정일 | 상환계획 | | | 상환실적 | | | | | | 확인인 | |
|----|-----------|------|----|----|------|---|----|----|-----|------|-----|--|
| | | 계 | 원금 | 이자 | 일자 | 계 | 원금 | 이자 | 연체료 | 연체일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5호 서식]

자활기금 상환 통지서

1. 대상자

- 성 명 (법인·단체명)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전화 :)

2. 상환금액 : 금 원(₩ 원)

| 원금 | 이자 | 비 고 |
|----|----|-----|
| | | |

3. 회수사유 :

4. 상환기한 :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 (통지일 : 20 . . .)

5. 상환방법 : 계좌입금, 납입고지서

6. 특기사항

- 1. 상환기한 내에 상환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자활기금상환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직인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u>관하여 필요한 사항</u>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신 설></u></p> | <p>제1조(목적) ----- ----- ----- <u>필요한</u> ----- -----.</p> <p>제1조의2(운영규모 등) ① 남원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조성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성액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운용 규모를 정하여 <u>조례 제3조에서 정한 용도로 활용</u>하여야 한다. 단, 사업자금 대여 등 용자금은 기금운용 가능 범위에서 20퍼센트를 추가하여 <u>활용할 수 있다.</u></p> <p>② 기금 조성액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적립된 기금 조성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u>운용규모를 정하여야 한다.</u></p> <p>③ 이때 <u>운용재원은 따로 구분하지 않고, 적극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u> 다만,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 조성액에 따른 <u>운용범위 · 재원 등을 남원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u></p> |
| <p>제2조(재정보증) ① 「남원시 자</p> | <p>제2조(재정보증) ①-----</p> |

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활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사람의 재정보증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자활기업자금
가. (생략)

나. 담보대출: 융자금액이 금융기관에서 정한 부동산 담보범위 내 담보설정이 가능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에 필요한 관계서류는 재산세납부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속사업장 대표가 확인한 최근 3개월 동안의 월급여명세표와 재직증명서, 부동산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로 한다.

<신설>

----- 융자받으려는

-----.

1. (현행과 같음)
2. -----
가. (현행과 같음)

나. 담보대출: 융자금액이 금융기관에서 정한 부동산 담보범위에서 담보설정이 가능하거나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② -----

신용보증서, 소속사업장 -----

-----.

제2조의2(기금의 지급)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자활기금을 대여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자활기금 대여결정통지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금을 대여하고, 자격증 취득 장려금 등 자활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자활기금 지원결정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용자금의 관리) ① 시장은 용자금의 지급 및 회수 등 자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자활기금 대여자금 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2. 자활기금 대여자금 상환카드 (별지 제2호서식)

② (생략)

제5조(체납자조치) ①시장은 기금을 용자받은 사람이 상환을 체납할 때에는 상환금의 납입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재정보증인에게 체납상황을 통보하여 그 납입을 촉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촉구를 받은 사람이 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107조부터 133조까지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원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4조(용자금의 관리) ① -----

-----.

1. -----
(별지 제3호 서식)
2. -----
(별지 제4호 서식)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체납자조치) ① -----

-----.

② -----

---제107조부터 제133조까지에

----- 위원회-----
-----.

제6조(중복용자 금지)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자활기금을 용자받은 사람은 용자금상환 완료 전까지 조례에서 정한 자활기금에 대해 중복용자를 금지한다.

<신 설>

<신 설>

제6조(중복용자 금지) --- 제8조 및 제8조의2-----

-----.

제6조의2(기금반환 통보)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제2항 및 제8조의2제4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기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금을 대여한 자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자활기금 상환 통지서(별지 제5호 서식)를 발송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내에 대여 받은 기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6조의3(상환기간 연장) ① 시장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4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라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남원시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7년 6월 16일

남원시 규칙 제 607 호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시세 기본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남원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남원시 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남원시 시세 기본 조

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록하여 수령인의 서명·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록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

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 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을 붙여 「남원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록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남원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시세 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5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록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환급금 지급)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 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9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제9조(과세전적부심사 사후조치) 시장은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건에 대한 채택 또는 일부채택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 등 사후조치) ① 시장은 도지사로부터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건에 대한 취소 또는 경정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되었거나 법원에 소장 또는 상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12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남원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제6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로, “같은 법 제51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

나. 제8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로, “같은 법 제51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

다. 제10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로, “같은 법 제51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

② 「남원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로 한다.

나. 제2조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3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조”로 한다.

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년도 기분(월분) 세를 다음과 같이 취소(경정)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 | | | |
|--------|-----|----|----|----|
| 결 재 | 담당자 | 담당 | 과장 | 국장 |
| | | | | |

부과취소(경정) 내역

| 세목 | 연도/ 기분 | 당초 | | 취소 | | 경정 | | 차액 | |
|----|-----------|----|----|----|----|----|----|----|----|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붙임과 같습니다.

- (주) 1.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군세에 병기·부과되는 도세는 시·군세 취소·경정 시 함께 결정한다.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록한다.

지방세환급금 총당 결의서

| | | | | | |
|-----|--|--------------------------|--|-------|-----|
| 결 재 | | 발 의 | | 년 월 일 | (인) |
| 징수관 | | 징 수 부 등 재 | | 년 월 일 | (인) |
| 과 장 | | 지 방 세 환 급 금 정 리 부 등 재 | | 년 월 일 | (인) |
| 담 당 | | 총 당 통 지 서 발 부 | | 년 월 일 | (인) |
| 담당자 | | 통 지 서 번 호 | | 년 월 일 | (인) |

총당금액 (금 원) (₩)

| 세입항목 | 구분 | 세입 연도 | 세입과목 | | | | 환급금 총액 | 과오납 연월일 | 환급자 | |
|------------------------|----|----------|------|---|---|------|-----------|------------|-----|----|
| | | | 관 | 항 | 목 | 과세번호 | | | 주 소 | 성명 |
| | | | | | | | | | | |
| 총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총당액 총액) | | | | | | | | | | |

| 총당내역 | 구분 | 세입 연도 | 세입과목 | | | | 미납 총액 | 총당액 | 납세의무자 | |
|---------------------------|----|----------|------|---|---|------|----------|-----|-------|----|
| | | | 관 | 항 | 목 | 과세번호 | | | 주소 | 성명 |
| | | | | | | | | | | |
| 총당 후 미수납(총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 | | | | | | | | | | |

| | | | |
|----|--|-------|-----|
| 적요 | | 수납부정리 | (인) |
|----|--|-------|-----|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과세전적부심사결정 처리 결과보고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제 호에 대한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 | | | | | | | | |
|----------|--------------|-------|----|----------|----|------------------|----|-----------|----|
| 청구인 | 성명 | | |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
| | 주소 또는 영업장 | | | | | | | | |
| | 상호 | | | | | | | | |
| 연도 기분 | 세목 | 당초 결정 | | 취소(경정)결정 | | 차감액 | | 감액 결정일 | 비고 |
| | | 과표 | 세액 | 과표 | 세액 | 과표 | 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 조치사항 관계서류 사본 1부. 끝.

행정기관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m²)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의결정 처리 결과보고

(심사청구, 이의신청)결정서 제 호에 대한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 | | | | | | | | |
|-------------|----|-------|----|----------|----|------------------|----|-----------|----|
| 청 구 인 | 성명 | | |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
| | 주소 | | | | | | | | |
| | 상호 | | | | | | | | |
| 연도 기분 | 세목 | 당초 결정 | | 취소(경정)결정 | | 차감액 | | 감액 결정일 | 비고 |
| | | 과표 | 세액 | 과표 | 세액 | 과표 | 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끝.

행정기관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조세심판원
 법원
에 의한 지방세구제청구사항보고

| | | | | | | |
|---------|-------------------|-----------|----------------|--------|------|-------|
| 당사자 | 청 구 인 | | | 처분청 | | |
| | 주 소 | 법인명 또는 상호 | 성명 | | | |
| | | | | | | |
| 불복경위 | 제출 연월일 | 제출기관 |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상황 | | | |
| | | | 청구구분 | 결정연월일 | 각하 | 기각 |
| | 1. 조세심판원 2. 법원 | 1. 이의신청 | 년 월 일 | | | |
| | | 2. 심사청구 | 년 월 일 | | | |
| 3. 소송제기 | | 년 월 일 | | | | |
| 처분내용 | 세목 | 과표 | 세액 | 연도(기)분 | 체납여부 | 고지연월일 |
| | | | | | | |
| | 처분 사유 | | | | | |
| 불복내용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m²)

남원시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남원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7년 6월 16일

남원시 규칙 제 608 호

남원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시세 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남원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금고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 수납 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남원시 시세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보통징수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 ① 부과부서의 장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시세를 과세할 경우 징수원인·세액·소속연도·세입과목·납세의무자·납부기한·납부 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별지 제1호 서

식의 부과결정결의서에 따라 부과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과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결정액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록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세입결정액통지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수납부에 그 결정사항을 기록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제1항의 부과결정을 한 경우 제2항의 수납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공유물인 경우 : 납세의무자인 공유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소유 지분
2. 상속인 경우 : 납세의무자인 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상속 지분
3. 공동사업자인 경우 : 납세의무자인 공동사업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지분

④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 ① 부과부서의 장은 시세 신고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수납부에 날짜별로 그 처리내역을 기록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시금고에서 시세 영수필통지서(수납자료 전산화에 따른 전산파일 또는 전산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지받은 경우 세입계좌의 입금금액과 영수필통지서의 집계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1항의 수납부에 소인을 하여 지체 없이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제2항의 소인된 수납부를 통지받은 경우 그 수납세액에 대해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납부결정결의서에 따라 결정을 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결정액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록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납세고지서의 작성) 법 제12조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전산으로 작성하여 출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전산 출력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한 납세고지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소인) 징수부서의 장은 시금고에서 영수필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수납부에 그 수납사항을 소인하여야 한다.

제8조(납기마감 처리) ① 징수부서의 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미수납자료에 대해 체납부를 작성하여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 및 별지 제7호 서식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고, 해당 체납액이 징수·감액 또는 소멸시효 등으로 납세의무가 소멸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방세 체납액정리표 관리)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지방세 체납액 정리표를 작성하고,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 조치사항과 체납처분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세입징수 결과 제출) 시장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시세의 세입징수보고서를 매월 작성한 후 시금고로부터 통지된 세입월계표를 붙여 다음 달 15일까지 전라북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제출기한은 5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세입마감) ① 시장은 매년 12월 15일까지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른 징수결정을 끝내야 하고, 납부기한은 해당연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납기 전 징수 등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매월의 징수부는 다음 달 20일까지 마감하여야 하고, 해당 회계연도의 징수부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감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세 미수납액의 이월) ① 부과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시세는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6호 서식 및 별지 제7호 서식의 체납액 정리부에 그 체납내역 등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세 체납액은 결손처리하고 제1항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 징수부서의 장은 해당연도에 부과결정한 시세가 해당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해당연도의 장부는 마감하여야 한다.

제13조(결손처분) 법 제106조에 따른 결손처분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결손결정 결의서 및 별지 제9호 서식의 결손처분표(갑, 을)에 따른다.

제14조(지난 회계연도 결손처분 취소 시 이월액 정리) 해당연도에서 지난 회계

연도의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부의 해당연도 조정액란에 결손 처분 취소액과 그 취소에 따라 새로 발생하는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을 체납액 이월액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제15조(결손처분의 사후관리)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제16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청) 시장이 시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를 전라북도지사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제17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 | | | | |
|---|------------|-------------------------|------------------------|-----|---|
|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style="margin-right: 10px;"> <input type="checkbox"/> 부과 <input type="checkbox"/> 신고납부 <input type="checkbox"/> 감액 <input type="checkbox"/> 결손 </div> <div style="font-size: 2em; font-weight: bold;">]</div> <div style="margin-left: 10px;"> <h2 style="margin: 0;">결정결의서</h2> </div> </div> | | | | | |
| 징수관 | | 발의 | 년 월 일 (인) | | |
| | | 징수부 등재 | 년 월 일 (인) | | |
| 분임징수관 | | 납·감액 통지 또는 납세 고지서 발부 | 년 월 일 (인) | | |
| 담당 | | 납액 통지 제 호 | 년 월 일 (인) | | |
| 담당자 | | 납기 |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 | |
| 세입과목 | 관 | 세입연시·군 | 년시·군 세입 | | |
| | | 결정내용 | 본세 | 가산금 | 계 |
| | 항목 | 세액 | | | |
| | | 가산세 | | | |
| | | 결정액 | | | |
| 결정세액 | 금 원(₩) | | | | |
| 납세인원 | 시(시·군) | 구(시·군) | 번길 외 명 | | |
| 적요 | 년시·군 월 분 세 | | 수납부 등재 | (인) | |
| | | | 환급금 정리 | (인) | |
| 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 | | | | | |
| ※ 감액·결손은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 | | | | |

세입(부과·신고납부·감액·결손)결정액 통지서

제 호

수입금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세입을 부과·신고납부·감액·결손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의일 : 년 월 일

세입징수관 (인)

세 목 []세 / 세목구분 [] / 시·
군 []

| 세입연시·군 | 세목 | 세액 | | | 납세인원 | 납부기한 | 비고 |
|--------|----|----|-----|---|------|------|----|
| | | 본세 | 가산금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남원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제5조제2항 관련)

수 납 부

| 과세번호 | 납세자명 | 징수결의일 | 납기일 | 수납구분 | | | | |
|--------------|------|-------|-------|------|-------|------|-------|------|
| 과세물건 | | 과표액 | 과세물건지 | 부과금액 | 감액/결손 | 정당세액 | 은행수납일 | 수납금액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전화번호 | 주소 | | | | | |
| | | 세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

■ 남원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제5조제4항 관련)

징 수 부

회계연도 시·군 : 년 시·군
 결의 연월일 : 년 시·군 월분
 제 목 :
 징 수 세 목 :

| 구분 | 연 간 목표액 | 월까지 목표액 | 추 경 목표액 | 조정액 | | 징수액 | | 불납결손액 | | 미수액 | 징수비율 | | | 지방세환급금 | |
|-------------|------------|------------|------------|-----|-------------|-----|-------------|-------|-------------|-----|------|-----|-----|--------|-------------|
| | | | | 본월분 | 본월분까지 누계 | 본월분 | 본월분까지 누계 | 본월분 | 본월분까지 누계 | | 대년간 | 대월간 | 대조정 | 본월분 | 본월분까지 누계 |
| 총 합계 | | | | | | | | | | | | | | | |
| 현년시·군 합계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〇〇세 | | | | | | | | | | | | | | | |
| 〇〇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m²)

■ 남원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제9조제2항 관련)

○ ○ **이월 체납액 정리부**
 ○○년 시·군 ○ ○기(월)분
 (○ ○ 읍·면·동)

| 과세 번호 | 세목 | 본세 | 과년 시·군 가산금 총계 | 증가산금 | | | | | | | | | | | | 가산금 총누계 | 수납인 | 체납자 주소 | 과세 물건 |
|----------|----|----|------------------------|------|----|----|----|----|----|----|----|----|-----|-----|-----|------------|-----|---------|----------|
| | | | | 1회 | 2회 | 3회 | 4회 | 5회 | 6회 | 7회 | 8회 | 9회 | 10회 | 11회 | 12회 | | | 성명(법인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57mm×364mm(백상지 80g/m²)

지방세 체납액정리표

| 과세물건 | | | 전화번호 | | | | | | | | | | |
|-------------------------------------|-----------------|----|------------------|--------------|------|-----|----|----|----|----|-----|----|--|
| 상 호 | | | 성 명 | | | | | | | | | | |
| |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남/여) | | | | | | | | | |
| 영업장소 | | | | | | | | | | | | | |
| 주소 | 이전 년 월 일 | | | | | | | | | | | | |
| 주소 | 이전 년 월 일 | | | | | | | | | | | | |
| 주소 | 이전 년 월 일 | | | | | | | | | | | | |
| 주소 | | | | | | | | | | | | | |
| 세목 | 연시·군 | 납기 | 과세번호 | 독촉 | | 체납액 | | | | | | 합계 | |
| | | | | 발부일 | 납부기한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 | | | | 체납자 주소지 약시·군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m²)

(뒤 쪽)

| 체납정리보고 | | | 처리전망 | 조사자 |
|--|----|----|--|-----|
| 담당자 | 담당 | 과장 | | |
| | | | | (인) |
| <p style="text-align: center;">주거 확인</p> <p>1. 주민등록 유무</p> <p>2. 거주사실 유무</p> <p>3. 행선지</p> <p>4. 전출구분 : 신고, 무단</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소속 직급 성명</p> | | | <p style="text-align: center;">재산 확인</p> <p>1. 건축물관리대장 유무</p> <p>2. 토지대장 유무</p> <p>3. 차량대장</p> <p>4. 과세구분자료 : 신고, 직권</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소속 직급 성명</p> | |
| <p style="text-align: center;">생활상태 확인</p> <p>1. 가옥 : 자가, 전세, 월세</p> <p>2. 생활상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p> <p>3. 그 밖의 사항 :</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소속 직급 성명</p> | | | <p style="text-align: center;">재조사 확인</p> <p>위 사실을 재조사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함.</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소속 직급 성명</p> | |

210mm×297mm(백상지 80g/㎡)

| 결 손 처 분 표 | | | | | | | | | |
|---------------------------|----------|----|----|--|------------------|-------|----|-------|--|
| 결재 | | |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결손처분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 | | | |
| 담당자 | 담당 | 과장 | 국장 | | | | | | |
| | | | | | | | | | |
| 체납자 | 주소 | | | | 상 호 | | | (남/여) | |
| | 성명 | |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 |
| 과세 번호 | 연 시·군 | 기분 | 납기 | 세목 | 세액 | | | 과세물건 | |
| | | | | | 본세 | 가산금 | 계 | | |
| | | | | | | | | | |
| 조사결과 | | | | | | | | | |
| 구분 | 조사내용 | | | 조사일 | 조사자 | | | | |
| | | | | | 직급 | 성명 | 서명 | | |
| 주민등록지 조사 | | | | | | | | | |
| 재산조사 | | | | | | | | | |
| 허가 및 그 밖의 사항 | | | | | | | | | |
|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 | | | | | | | | |
| 조사사항 | | | | | 조사 및 확인자 | | | | |
| | | | | | 조사자 | (담당자) | : | (인) | |
| | | | | | | | : | (인) | |
| | | | | | 확인자 | (과 장) | : | (인) | |
| | | | | | | | : | (인) | |

- ※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을)을 사용한다.
-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을)을 사용한다.
-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결 손 처 분 표

| 조사사항 | 조사 및 확인자 |
|---------------------------|----------|
| 1. 주민등록지 및 거주지 조사 | |
| 2. 재산조사 | |
| 3. 인·허가사항, 그 밖의 재산은닉 여부조사 | |

210mm×297mm(백상지 80g/㎡)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 시행 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17년 06월 일

남 원 시 장

1. 사 업 명 : 개간사업
2. 사업목적 : 미간지를 농지로 조성하여 소득증대 기여
3. 사 업 비 : 자력사업
4. 사업내용

| 토지의 소유자 (사업 시행자) | | 토 지 의 표 시 | | | | | | 개간대상적 면 (㎡) |
|---------------------|---------------------------|-----------|-----|----|------|----|-----------|-------------------|
| 성 명 | 주 소 | 시 | 읍면동 | 리 | 지번 | 지목 | 지적 (㎡) | |
| 곽** | 전남 곡성군 석곡면 *** ***-*** | 남원 | 대강 | 사석 | 산176 | 임야 | 33,233 | 4,990 |

5. 사업기간 : 2017. 06. ~ 2018. 04. 30.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농정과 농업시설(620-639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운봉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

남원시 운봉읍 동천리, 서천리, 용산리 일원의 「운봉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선도지구)」 기본계획 승인에 따라 『농어촌정비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7. 6. 12.

남 원 시 장

1. 사 업 명 : 운봉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선도지구)
2. 위 치 : 운봉읍 동천리, 서천리, 용산리 일원
3. 사업목적 : 농촌 중심지를 지역의 잠재력과 고유의 테마를 살려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 발전거점으로 육성하고, 배후마을과 도시를 연결하는 연결 거점으로서 지역생활권 구현의 중심 역할 수행
4. 사업내용 :
 - 기초생활기반 : 하늘아래 운봉마루, 사랑앓 작은목욕탕 정비, 운봉 서림공원 정비
 - 지역경관개선 : 바래봉 축제공간 정비, 하늘아래 구름길 정비
 - 지역역량강화 : 교육, 컨설팅, 마을경영지원, 홍보마케팅, 부대비용 등
5. 사 업 비 : 8,000백만원(국비5,575 / 도비1,194.5 / 시비1,194.5) 자부담36
6. 사업기간 : 2016 ~ 2020년(5년)
7. 사업시행자 : 남원시장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농정과(☎620-639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승인내용 1부. 끝.

운봉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승인 내역

□ 사업개요

- 사업명 : 운봉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선도지구)
- 위치 : 운봉읍 동천리, 서천리, 용산리 일원
- 사업비 : 8,000백만원(국비5,575 /도비1,194.5 /시비1,194.5) 자부담 별도36
- 사업기간 : 2016 ~ 2020(5년간)
- 사업시행자 : 남원시장

□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 하늘아래 운봉마루, 사랑애 작은목욕탕 정비, 운봉서림공원 정비
- 지역경관개선 : 바래봉 축제공간 정비, 하늘아래 구름길 정비
- 지역역량강화 : 교육, 컨설팅, 마을경영지원, 홍보마케팅, 부대비용 등

□ 사업비 재원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구분 | 계 | 1년차 (2016년) | 2년차 (2017년) | 3년차 (2018년) | 4년차 (2019년) | 5년차 (2020년) |
|-----|---------|----------------|----------------|----------------|----------------|----------------|
| 계 | 8,000.0 | 1,200.0 | 714.0 | 4,360.0 | 1,450.0 | 276.0 |
| 국비 | 5,575.0 | 840.0 | 500.0 | 3,027.0 | 1,015.0 | 193.0 |
| 지방비 | 2,389.0 | 360.0 | 214.0 | 1,297.0 | 435.0 | 83.0 |
| 도비 | 1,194.5 | 180.0 | 107.0 | 648.5 | 217.5 | 41.5 |
| 시비 | 1,194.5 | 180.0 | 107.0 | 648.5 | 217.5 | 41.5 |
| 자부담 | 36.0 | - | - | 36.0 | - | - |

□ 세부사업내역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 사업량 | 사업비 |
|----------------|--|---------------|
| 총계 | | 8,000 (36) |
| 기초생활기반확충 소계 | | 4,709 |
| 하늘아래 운봉마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늘아래 운봉마루 조성(904㎡ /2층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층 : 고속버스 승차장, 관광안내소, 사무실, 카페, 다목적 회의실 등 - 2층 : 작은 영화관, 작은도서관, 소회의실, 옥상정원 등 • 운봉 공설시장 정비(1개동) • 친환경 주차장 조성(740㎡) • 태양광 발전시설(10kw) | 3,695 |
| 사랑앓작은목욕탕 정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랑앓 작은 목욕탕 리모델링(15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은목욕탕 증축(35㎡) - 목욕탕 내 사우나실 철거 및 온탕 확장 - 기계실 확장 및 전기공사 - 온수탱크 증설 8ton → 16ton - 기계설비 확충(보일러, 배관 등) - 태양광 발전시설(5kw) | 150 |
| 운봉 서립공원 정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립공원 체육시설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테니스장 정비(2식), (신규)다목적구장 조성(1식), 막구조 설치(1,600㎡) - 야외 활동마당 조성(990㎡) 및 친환경 화장실 조성(1개소) • 서립공원 환경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모정 정비, 운동시설 정비, 휴게시설 설치, 정원등 설치 - 건강 지압로 조성(30m), 교목식재 등 | 864 |
| 지역경관개선 소계 | | 1,406 (36) |
| 바래봉 축제공간 정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래봉 사계절 축제장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래봉 축제장 부지조성 - 인조잔디(3,200㎡) 조성 - 축제안내 센터 조성 - 샤워실 및 탈의실 등 부대시설 조성 - 축제장 주변환경정비(웅산천 보설치, 잡목제거) | 481 |
| 하늘아래 구름길 정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가 참여형 중심상가 간판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봉로 내 상가 60개소, 핵점포 운영(3개소, 점포정비) • 중심가로(운봉로·운성로)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로 정비(포장정비, 포켓킴터 정비) • 통학로(운봉초·중학교)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로 정비(포장정비, 정원등 설치, 관목식재) - 학생 참여형 통학로 화단 조성 | 925 (36) |
| 지역역량강화 소계 | | 1,885 |
| 교육 | • 리더교육, 위탁교육, 선진지견학(추진위원회, 상인회 별도) | 343 |
| 컨설팅 | • 활성화 컨설팅 | 269 |
| 마을경영지원 | • 사무장 운영지원, 추진위원회 운영지원, PM단 운영지원 | 135 |
| 홍보마케팅 | • 홍보마케팅 | 119 |
| 부대비용 | • 기본계획, 세부설계, 공사감리, 사업관리, 기타부대비용 | 1,019 |

□ 세부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 수 입

(단위 : 백만원)

| 구 분 | 계 | 1년차 (2016) | 2년차 (2017) | 3년차 (2018) | 4년차 (2019) | 5년차 (2020) |
|-------|-------|---------------|---------------|---------------|---------------|---------------|
| 계 | 8,000 | 1,200 | 714 | 4,360 | 1,450 | 276 |
| 국 비 | 5,575 | 840 | 500 | 3,027 | 1,015 | 193 |
| 지 방 비 | 2,389 | 360 | 214 | 1,297 | 435 | 83 |
| 자 부 담 | 36 | - | - | 36 | - | - |

○ 지 출

(단위 : 백만원)

| 가능별 사업 | 세부 사업 | 사업량 | 합계 | 연차별 계획 | | | | |
|-------------------------|----------------|----------------------|---------------|---------------|---------------|---------------|---------------|---------------|
| | | | | 1년차 (2016) | 2년차 (2017) | 3년차 (2018) | 4년차 (2019) | 5년차 (2020) |
| 합 계 | | | 8,000 | 1,200 | 714 | 4,360 (36) | 1,450 | 276 |
| 기초 생활 기반 확충 | 하늘아래 운봉마루 | 904m ² | 3,695 | 720 | 459 | 2,516 | - | - |
| | 사랑앓작은목욕탕 정비 | 155m ² | 150 | - | 150 | - | - | - |
| | 운봉 서림공원 정비 | 17,411m ² | 864 | - | - | - | 864 | - |
| | 소 계 | | 4,709 | 720 | 609 | 2,516 | 864 | - |
| 지역 경관 개선 | 바래봉 축제공간 정비 | 13,270m ² | 481 | - | - | 481 | - | - |
| | 하늘아래 구름길 정비 | 490m | 925 (36) | - | - | 840 (36) | 85 | - |
| | 소 계 | | 1,406 (36) | - | - | 1,321 (36) | 85 | - |
| 지역 역량 강화 (S/W) | 주민교육 | 3식 | 343 | - | 18 | 41 | 163 | 121 |
| | 마을경영지원 | 3식 | 269 | - | - | 65 | 139 | 65 |
| | 찾아가는 행복꾸러미 | 2식 | 135 | - | 5 | 5 | 70 | 55 |
| | 부대비용 | 1식 | 119 | - | 22 | 32 | 32 | 33 |
| | 소 계 | | 1,019 | 480 | 60 | 380 | 97 | 2 |